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보고회

**‘88만원 세대’ 조차 될 수 없는 노동자, 청소년**  
**-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임금과**  
**노동인권실태보고-**

■ 때 : 2008년 6월 4일(수) 오전 10:00

■ 곳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차례

|  |    |
|--|----|
| [자료 1]                                 |    |
| 청소년아르바이트 임금 실태조사 결과 .....              | 3  |
| [자료 2]                                 |    |
| 면접조사를 통해 드러난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인권 실태 .....  | 17 |
| [자료 3]                                 |    |
| 거리 상담을 통해 드러난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인권 실태 ..... | 41 |
| [자료 4]                                 |    |
| 대책 : 알바 청소년 노동자 노동권 확보를 위하여 .....      | 47 |
| [자료 5]                                 |    |
| 후속 계획 .....                            | 51 |

# [자료1] 청소년아르바이트 임금 실태조사 결과

\* 발표 : 하인호

문학정보고등학교 교사/전교조실업교육위원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I. 조사의 목적

### (1) 청소년노동의 현실

- 청소년 노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단시간 노동)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조사는 2003년 노동부가 실시한 표본조사로, 전국 중고등학생 3만6825명 가운데 22.1%인 7969명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국 중고등학생의 수(2002년말 현재 366만3512명)로 환산하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수는 79만 명에 육박한다. 현재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요즘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일하는 청소년을 보는 일은 어렵지 않다.
- 청소년 노동이 증가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 노동력은 이미 기간 노동력을 이루고 있다. 패스트푸드점의 계산원과 조리원은 거의 대부분 청소년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으며, 편의점과 같은 대부분의 소규모 유통체인에서는 이미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고, 제조업의 현장에서도 전문계고 실습생이나, 병역특례라는 이름으로 현장 인력의 일정부분을 유지하고 있다.
- 청소년노동은 우리사회에서 보편적인 노동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지만, 청소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시각은 여전히 비정상적인 일탈행위로 바라보거나 청소년 노동을 온전한 개인의 노동으로 보지 않고 생계 보조형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청소년 노동을 소비성향과 연결시켜 비필수적이거나 과외노동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시각은 청소년의 노동을 평가절하시키며,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저임금을 고착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 (2) 조사의 취지

- 청소년노동이 급격하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노동실태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며, 청소년 노동실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턱없이 부족하여 청소년들은 노동시장에서 단지 값싼 임금으로 일을 부리기 쉬운 계층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최저임금 선 아래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없는 저임금에 방치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미흡하다 못해 전무한 실정이다.
- 그리하여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실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 특히 청소년임금에 관련된 문제를 부각시켜내어 그 중 청소년노동의 동기에 대한 사회

적 편견을 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또한 최저임금 결정 시기에 맞추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임금 실태를 폭로하여, 사회적 의제로 제기하기 위한 취지로 실태조사를 기획했다.

○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로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에서 실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드러냄으로써, 노동부 대책이 확대, 보장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할 것이다.

## II. 조사의 내용

○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의 동기, 임금수준과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여부를 중심으로 하되,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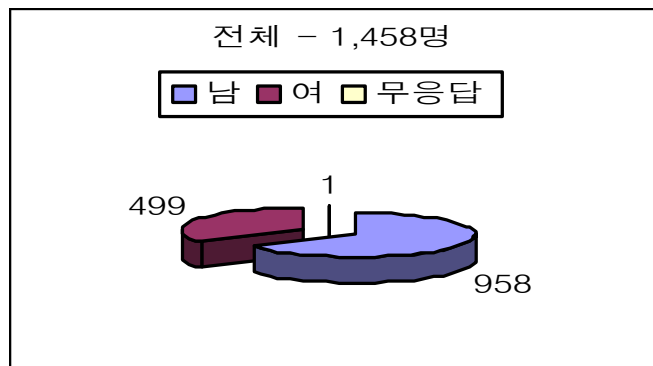
## III. 조사의 설계

| 구분   | 내용   |
|------|--|
| 조사대상 | 2008년 5월 서울, 인천, 경기, 대구, 대전, 경남, 강릉, 춘천, 전남, 전주, 충북 지역 청소년             |
| 조사기간 | 2008년 5월   |
| 표본크기 | 1458부  |
| 조사방법 | - 전교조 조합원 교사가 각자 소속 학교에서 설문지를 나누어 주고 수거<br>- 탈학교 청소년 컴퓨터에 설문지 나누어주고 수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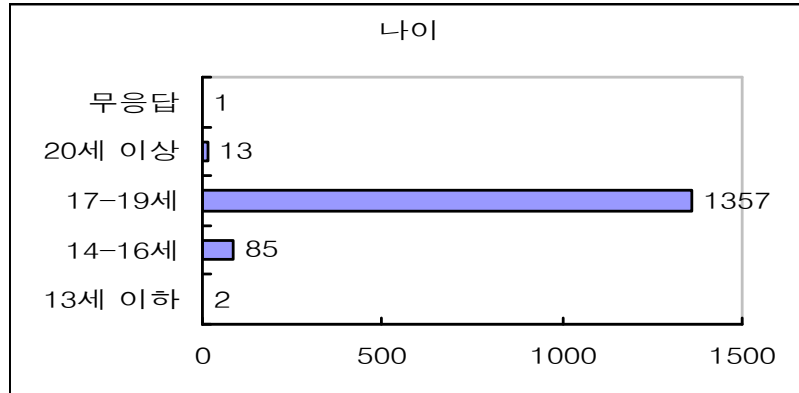
### 1. 기초조사

#### (1) 성별

○ 전체 1458명 중 남성이 958명, 여성이 499명이고, 무응답이 1명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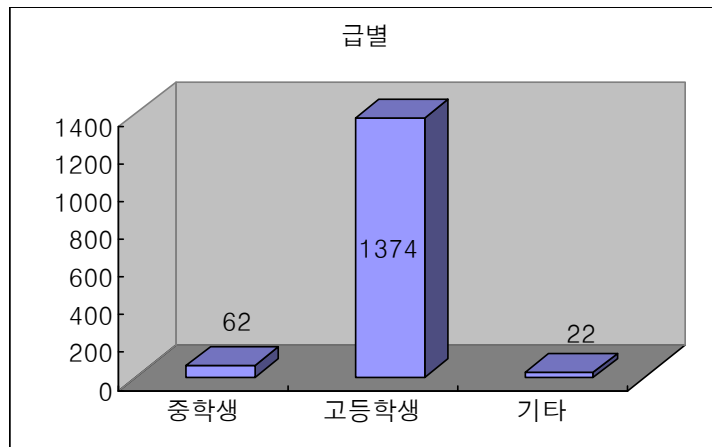


## (2) 나이



- 나이를 보면 17~19세까지가 1357명이고, 14~16세가 85명이다.
- 노동이 금지된 13세 이하의 연소자도 2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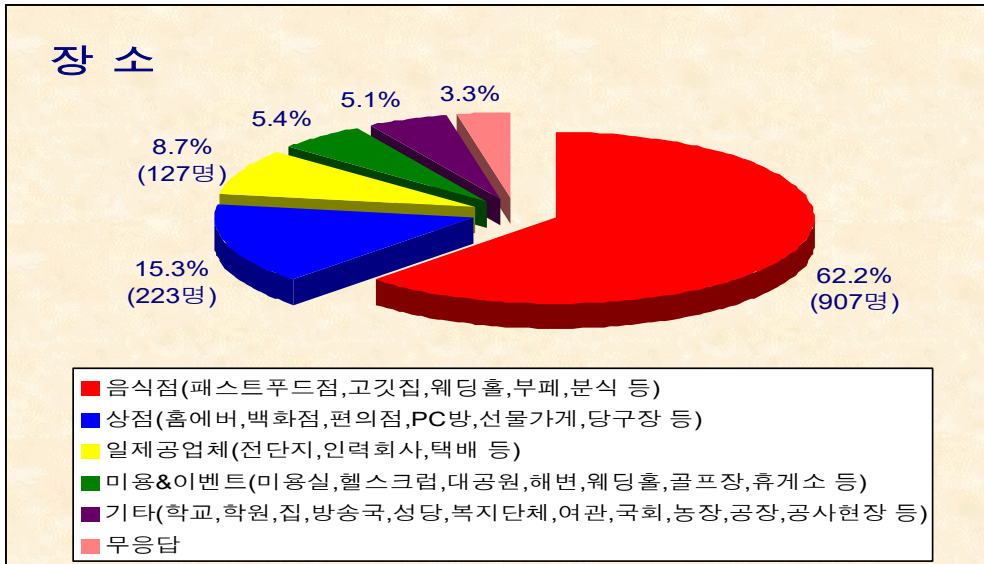
## (3) 급별



- 급별로는 고등학생이 13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이 62명이 설문에 응했다.
- 또한 기타에는 탈학교 등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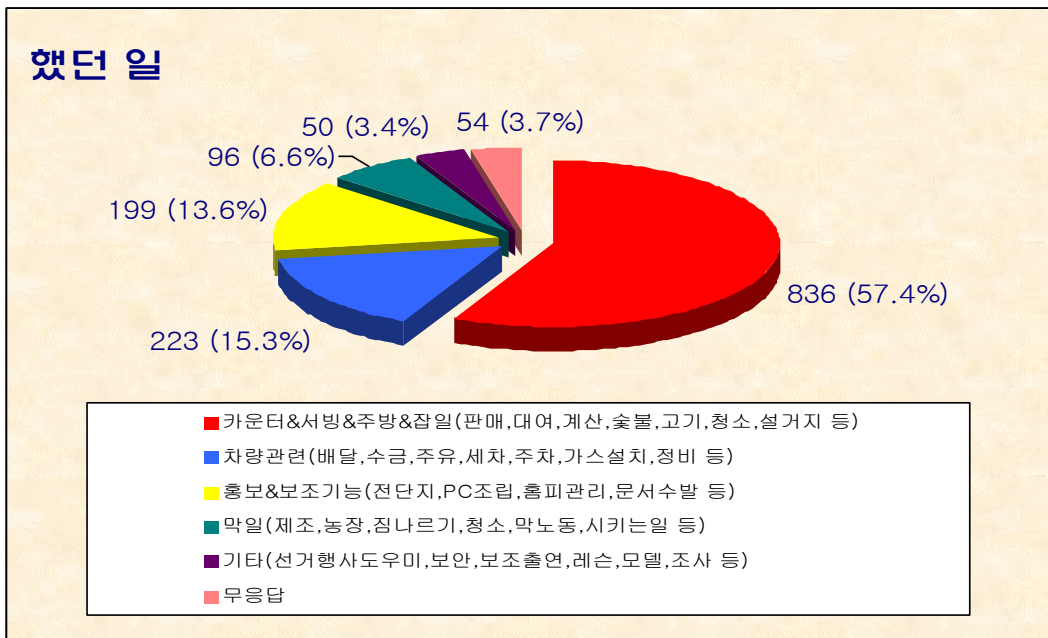
## 2. 아르바이트 한 곳 및 한 일

### (1) 아르바이트 한 곳 (주관식 조사)



- 주관식으로 질문을 하여 얻은 결과로, 청소년들의 62.2%가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업종이 다양한 것으로 보아 전 산업적으로 청소년 노동자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업종에서 집중되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이한 점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숙박업 '여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노동자를 활용하고 있으나 노동부는 이런 기본적인 관리, 감독 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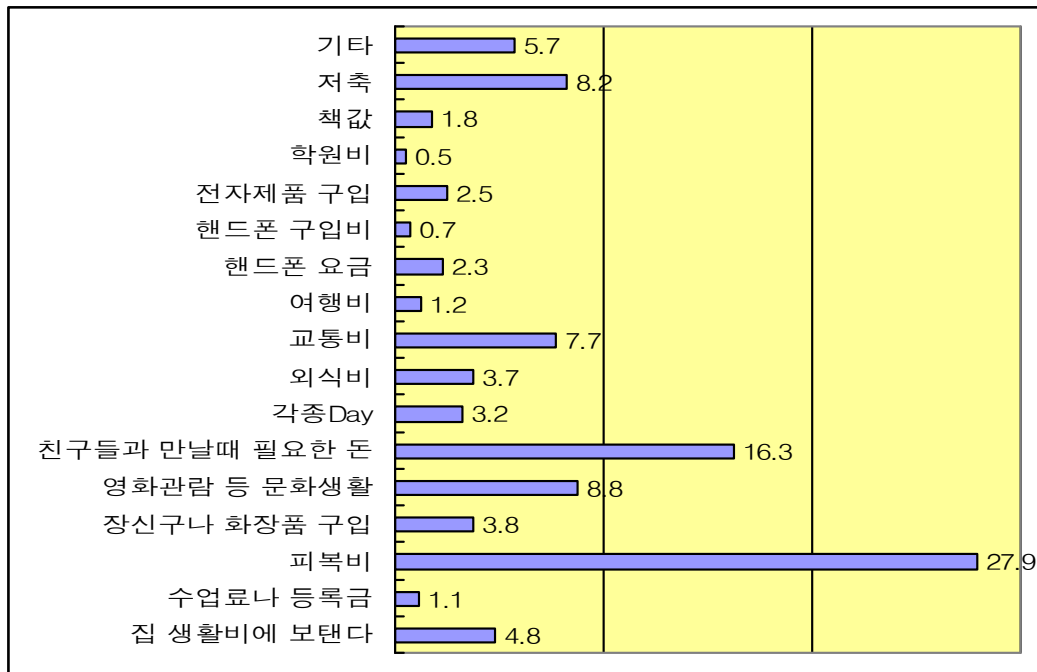
### (2) 아르바이트로 한 일 (주관식조사)



- 주관식으로 질문을 하여 얻은 결과로 알바장소가 음식점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을 반영하듯이 음식점에서 주로 하는 카운터,서빙,주방, 잡일이 57.4%로 많았다.
- 주로 서비스업종에서 단순한 업무를 중심으로 청소년노동자가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아르바이트 임금 사용처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 걱정되는 것

#### (1) 아르바이트 임금 사용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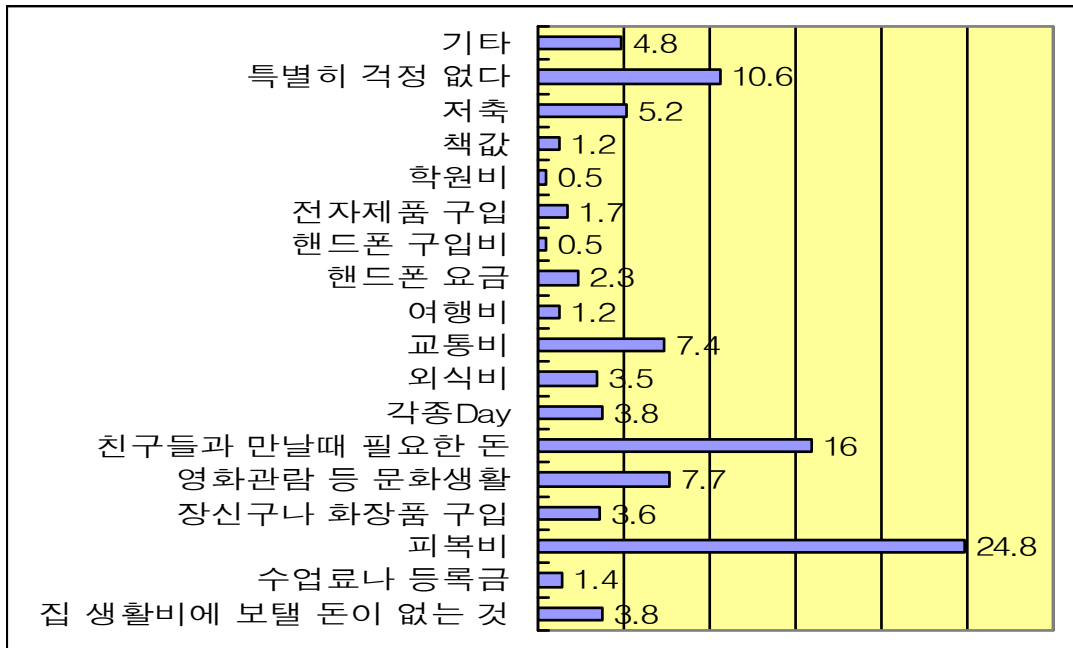


#### 생계비 계측조사 항목

| 계측조사 항목                 | 조사결과에 따른 항목          | %     |
|-------------------------|----------------------|-------|
| 식료품(외식포함)               | 외식비                  | 3.7%  |
| 광열수도                    | 해당사항없음               | 0%    |
| 교통,통신비(휴대폰, 인터넷, 대중교통비) | 교통비, 핸드폰 구입비, 핸드폰 요금 | 10.3% |
| 문화오락 (영화,방송수신료 등)       | 영화관람 등 문화생활          | 8.8%  |
| 주거비                     | 해당사항없음               | 0%    |
| 의료비                     | 해당사항없음               | 0%    |
| 교육비 ( 등록금, 교재구입비 등)     | 책값, 학원비, 수업료나 등록금    | 3.4%  |
| 각종행사비 (경조사비)            | 해당사항없음               | 0%    |
| 저축, 보험                  | 저축                   | 8.2%  |
| 피복비                     | 피복비                  | 27.9% |
| 합계                      |                      | 62.3% |

-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임금을 받아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피복비로 27.9%가 응답했다.
- 조사를 하고 있는 항목 모두가 생활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이긴 하지만 생계비 계층 조사 항목에 들어가는 것만 엄선해서 계산을 해보아도 그 수치는 62.3%이다. 그리고 친구들과 만날 때 필요한 돈 중에서도 식비, 문화생활비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하면 더 수치는 높아진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 노동자들은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가게에서 감당하지 못할 때, 그 비용을 청소년들이 스스로 벌어서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 저축을 한다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8.2%가 되는 것으로 보아 청소년노동자도 성인과 같이 똑같이 미래의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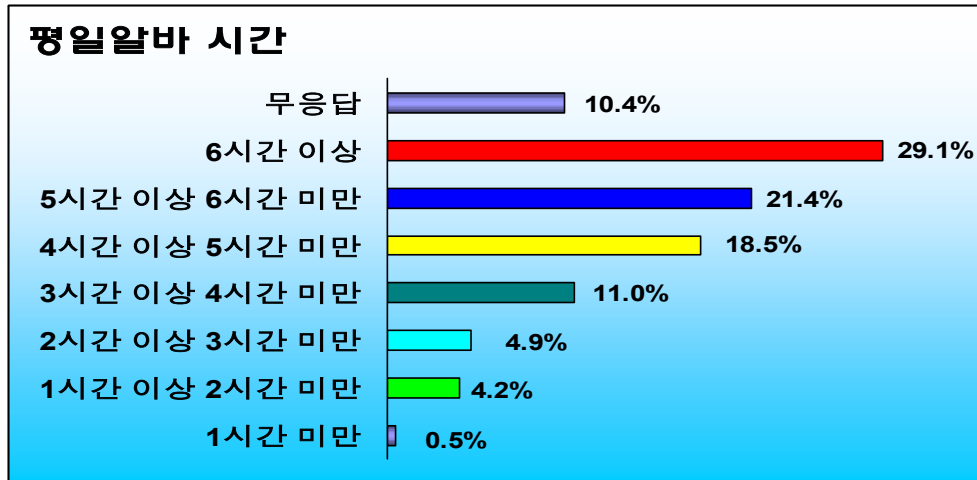


- 아르바이트 임금을 받지 못하면 걱정되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 '특별히 걱정 없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10.6% 밖에 되지 않은 것을 보아 89.4% 정도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일상적인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소비욕구를 충족하기위해 사용한다는 사회적 편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89.4%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보아, 청소년이 소비욕구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 그 외에는 특별히 아르바이트 임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 4. 평일 아르바이트 노동시간과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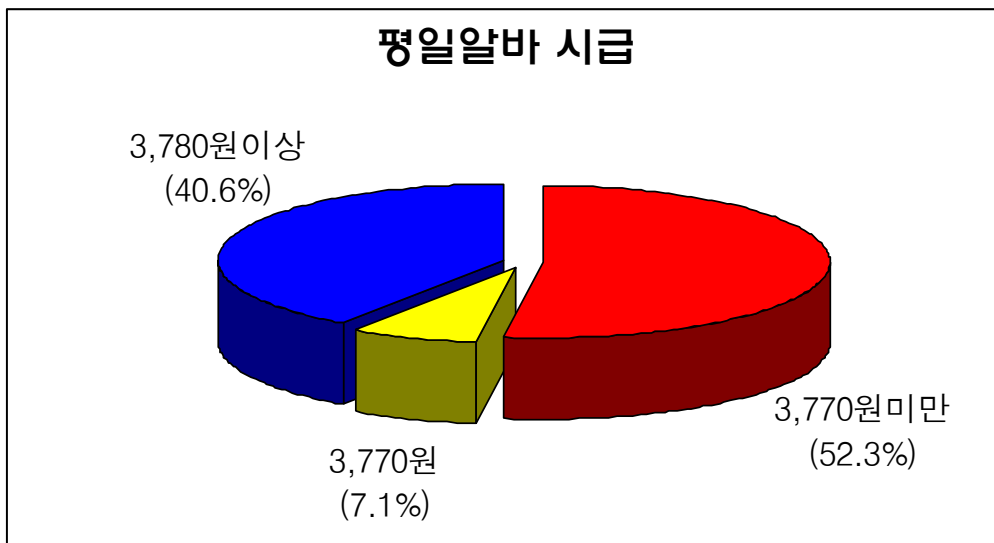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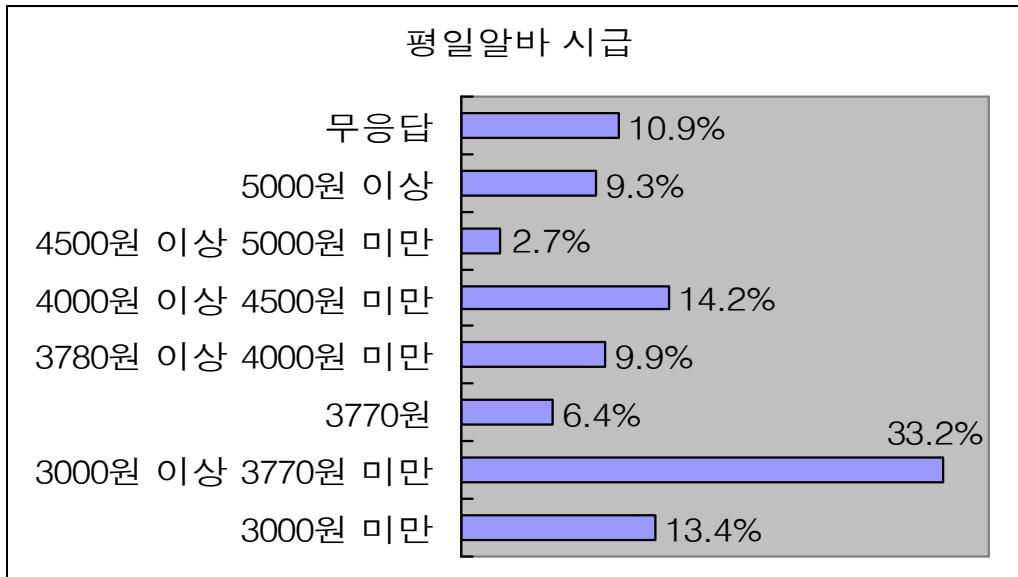
##### (1) 평일 1일 아르바이트 노동시간



|               | %    |
|---------------|------|
| 4시간 이상        | 69%  |
|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11%  |
|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 4.9% |
|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4.2% |
| 1시간 미만        | 0.5% |

- 평일 4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69% 이고, 게다가 6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는 청소년 노동자도 29.1%나 된다.
-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는 청소년이 대부분인 것을 감안할 때, 4시에 하교하여 5시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6시간 이상 노동을 하는 청소년은 11시까지 노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10시 이후부터는 근로기준법상 야간노동에 포함되므로 응답자의 약 30%정도는 야간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학업을 병행하는 청소년이 평일에 장시간노동 그리고 야간노동까지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임금이 워낙 저임금이므로 장시간노동, 야간노동을 해야하지만 생활할 만한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야간노동과 장시간 노동을 초래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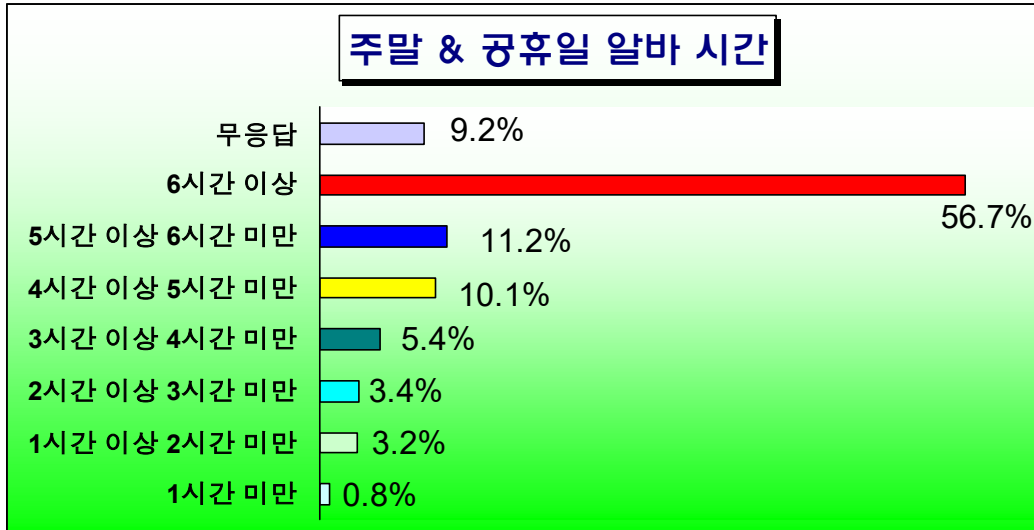
(2) 평일 아르바이트 임금(시급)



- 2008년 법정최저임금은 시간당 3,770원이다.
- 그러나 응답자 중 52.3%가 최저임금미만을 받고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점은 시간당 3000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청소년노동자도 응답자 중 15.1%나 된다는 것이다.
- 또한 노동부에서 2008년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조사한 연소자 사용 사업장 점검 결과로 발표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은 불과 4.0%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실제로 조사해본 결과 52.3%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을 비추어 봤을 때, 노동부의 점검은 일부 사업장에 제한적으로 감독을 했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감독을 나간 경우에도 사업주들에게만 조사하여 사업주들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은폐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의 연소자 사용 사업장 점검 방식 자체에 대한 개선 및 시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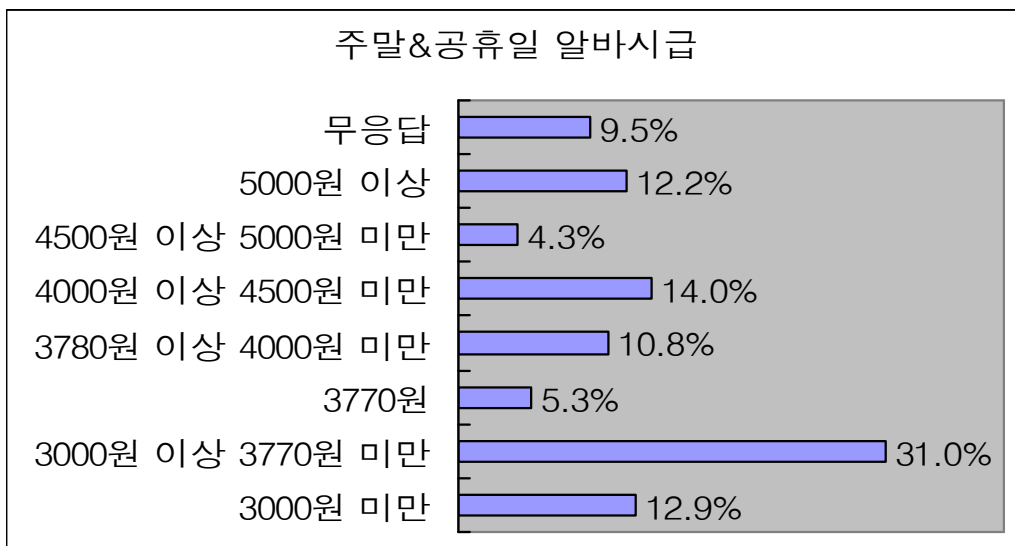
## 5. 주말 아르바이트 노동시간과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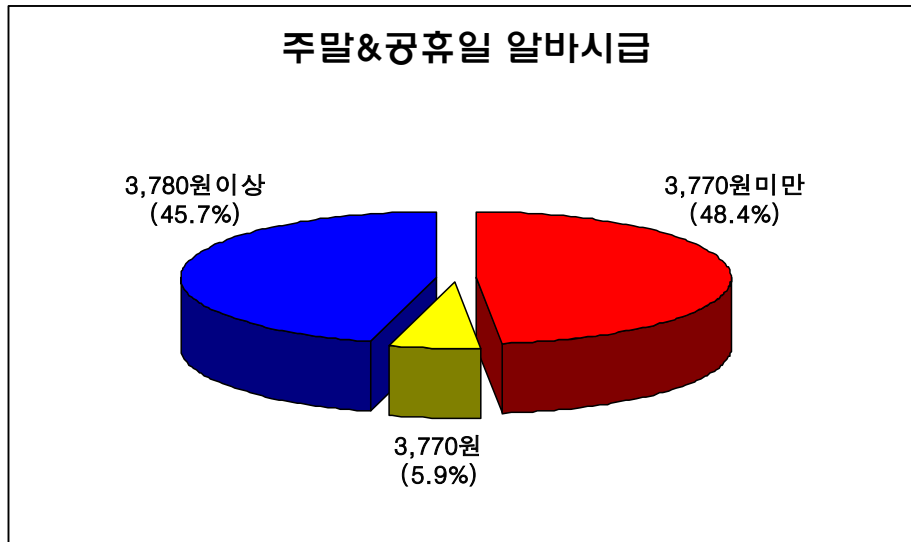
### (1) 주말 아르바이트 노동시간



- 주말과 공휴일에 아르바이트를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중 6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56.7%나 된다.
- 이것으로 볼 때, 평일에 일을 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주말에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고, 평일에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저임금노동이기 때문에 주말에 노동시간을 늘려 임금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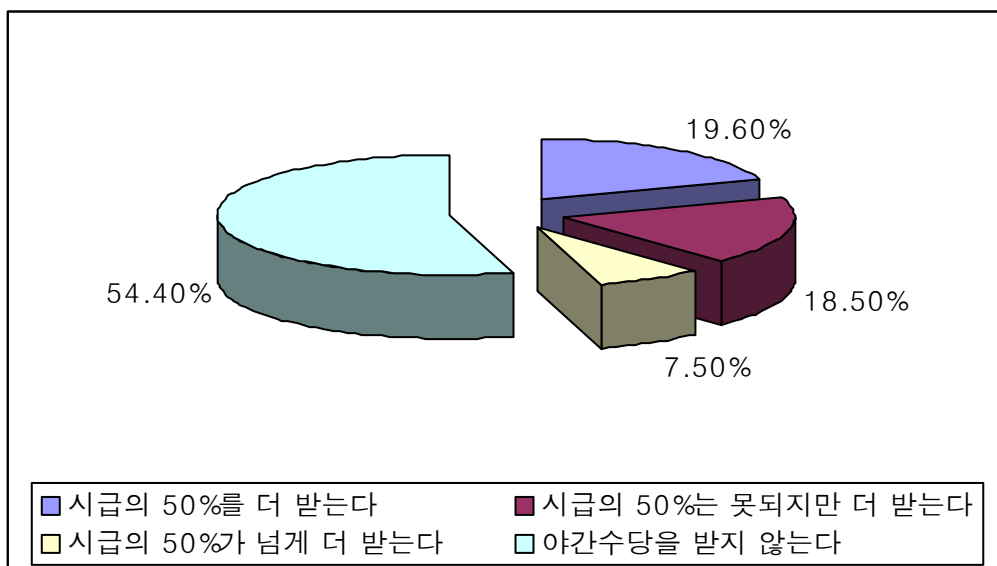
### (2) 주말 아르바이트 임금





- 주말과 공휴일에 시급 3770원 미만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가 48.4%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시급 3000원 미만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도 12.9%나 된다.
- 평일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이 4%정도 낮게 조사되었지만, 주말과 공휴일이라는 점을 감안해본다면 높은 수치가 아니다. 이러한 저임금노동이 결국 주말에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을 장시간노동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6. 야간노동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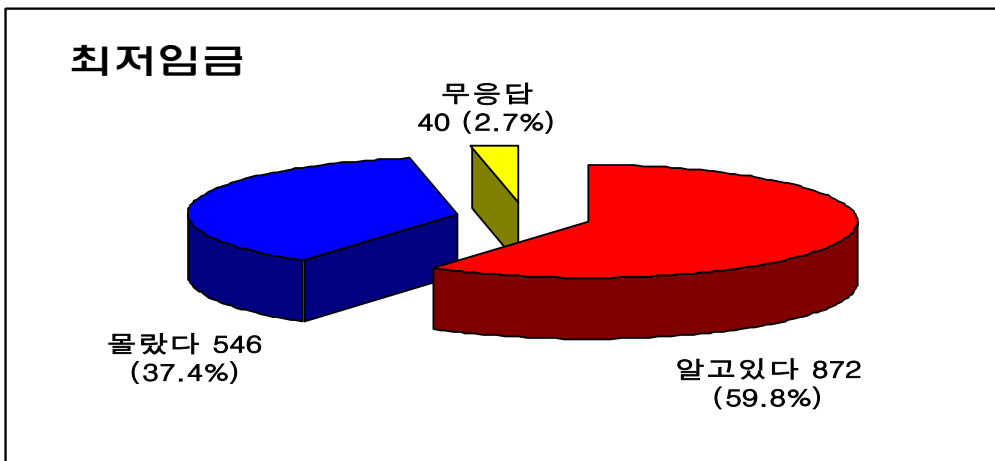


- 야간노동을 경험한 청소년 노동자가 전체 응답자 중 24.8%를 차지하고 있다.
- 야간노동을 경험한 청소년 노동자 593명 중 54.4%가 야간노동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 2008년 4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을 확대적용 해야한다는 권고를 냈고, 특히 야간노동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즉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대다수 중소기업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청소년 노동자들 절반이상이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감안 한다면 야간노동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즉시 확대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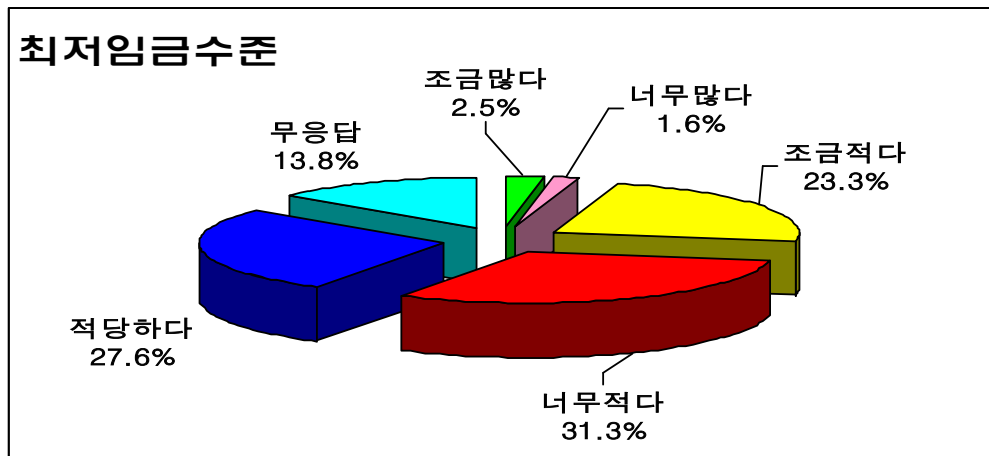
## 7. 최저임금에 대한 인지

### (1) 인지여부



- 법정최저임금(시급)에 대해서 알고 있는 청소년노동자는 59.8%로 나타났다.

### (2) 법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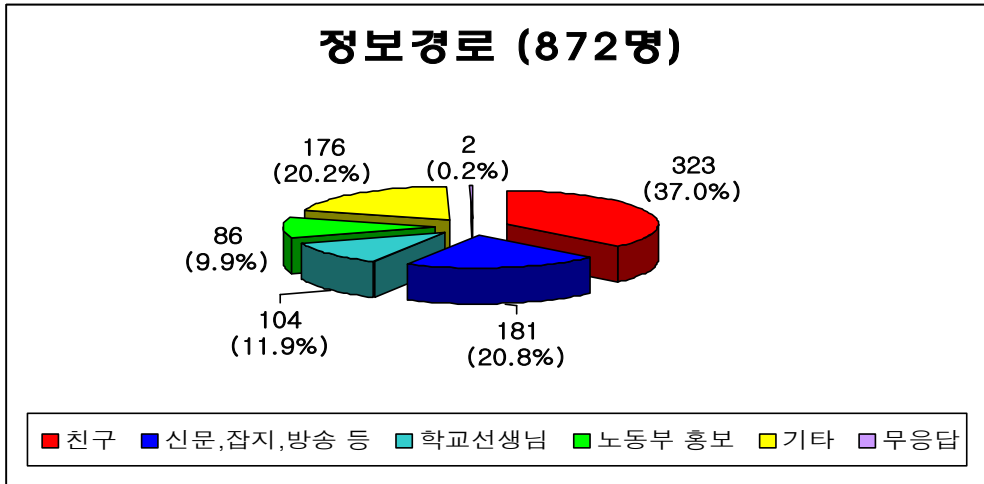


- 법정최저임금 시급 3770원 책정에 대한 질문은 하는 일에 대해 적다라고 54.3%가 응답했다. 50% 이상의 청소년 노동자가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이 적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너무 적다'라고 응답한 청소년 노동자가 31.3%인 것으로 보아 지

금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최저임금이 굉장히 적은 액수이며, 최저임금이 현실화  
 되어야한다는 것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그리고 '적당하다'와 '많다'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상당수는 아르바이트 임금으로 최저임  
 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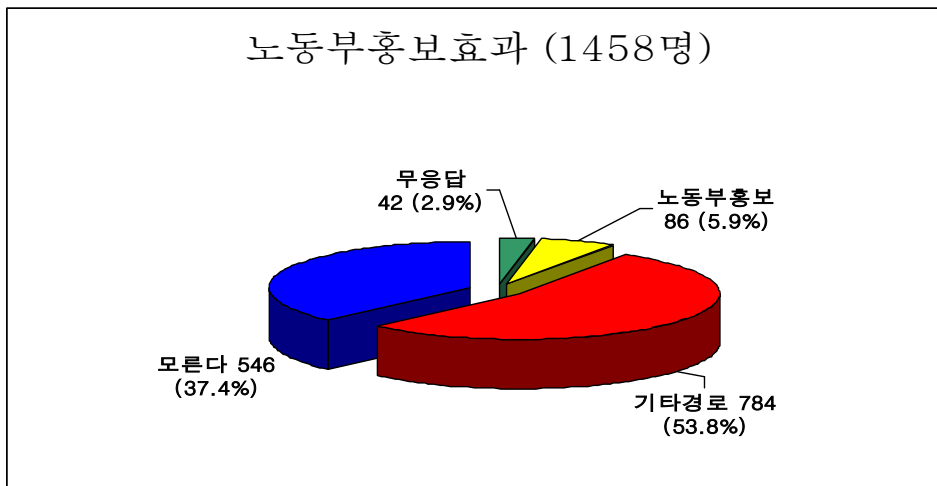
**(3) 최저임금 인지 경로**



- '최저임금을 알고있다'라고 응답을 한 872명 중 '친구를 통해 최저임금을 알았다'라고 응  
 답한 청소년 노동자가 37%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 또한 학교선생님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비율은 불과 11.9% 밖에 되지 않았다. 청소년 노  
 동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학교에서 교육을 노동기본법에 관련한 교육을 해야 함  
 에도 불과하고 그것이 아직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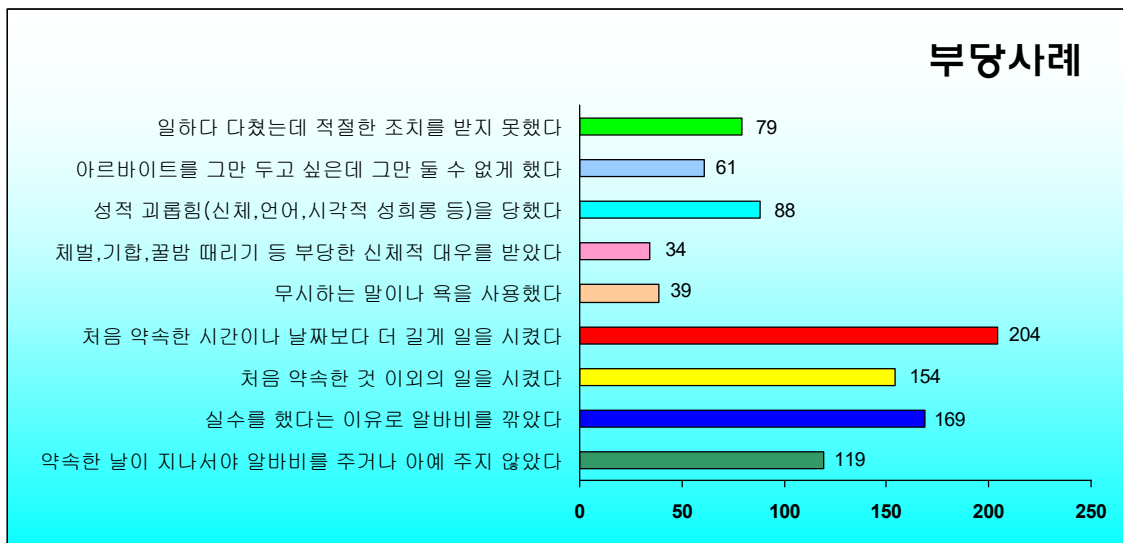
**(4) 노동부 홍보효과를 통한 인지여부**



- 조사한 전체 청소년 노동자 중에서 노동부 홍보효과를 통해서 알게 된 청소년 노동자는 불과 5.9% 밖에 되지 않았다. 노동부에서는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를 통해 알고 있다는 청소년 노동자가 극히 일부인 것을 볼 때, 일부 사업장에만 제한적으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고, 감독을 나간 경우에도 형식적인 조사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
-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는 청소년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사업장에 최저임금에 대한 안내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노동부의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 8. 부당한 대우에 대한 경험과 해결방법

### (1) 부당한 대우에 대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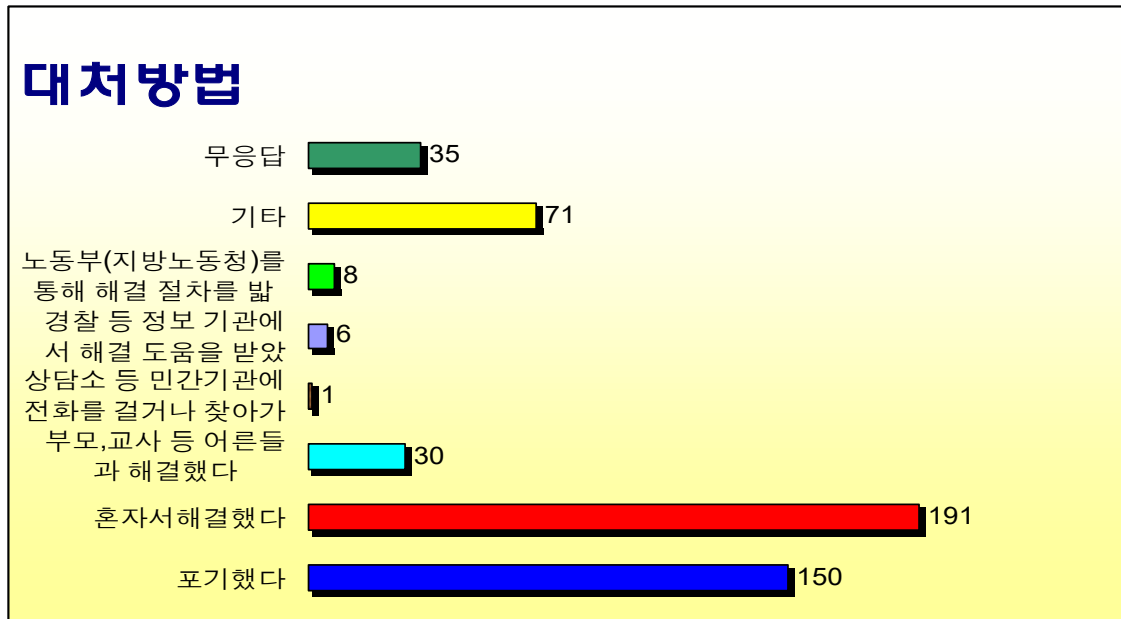


- 청소년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부당한 대우(위의 질문내용)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 인원(명) | 비율(%) |
|---|-------|-------|
|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로 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br>(초과근로, 과외 업무지시, 퇴직부자유) | 419   | 28.7% |
| 임금 및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br>(임금체불, 업무상재해 미보상, 최저임금)   | 367   | 25.1% |
| 인격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br>(폭언, 체벌, 성희롱 등)          | 161   | 11%   |

- 즉 설문조사에 응답한 1458명의 청소년노동자 중 419명은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로 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367명은 임금 및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 초과근로에 대한 응답이 많았는데 204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것은 약속한 시간에 일을 마치지 못하는 문제 뿐 아니라, 연장근로가 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임금 관련된 부당대우는 실제로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 게다가 성희롱을 당했다는 청소년노동자가 88명이나 된다. 대부분 여성이 성희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감안 할 때, 설문조사에 응한 여성청소년이 499명 중 17.6%의 여성 청소년노동자가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 (2)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경우 해결방법



- 혼자서 해결했다는 응답이 191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실제로 해결이 되었는지의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 기타로 나왔던 것 중 노동부를 통해 해결절차를 받았으나 해결되지 않았더라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해결절차를 밟아도 명확하게 해결이 되었는지 여부는 파악할 수 없다.



## [자료2] 면접조사를 통해 드러난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인권 실태

\* 발표 :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 차 례 >

#### I. 들어가며

1. 면접조사의 목적
2. 조사 시기
3. 조사 대상

#### II.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인권 실태

##### 1.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인권 실태 1

###### - 임금 문제

- 1)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초저임 노동
- 2) 하늘의 별 따기인 시간 외 수당
- 3) 강요되는 무임 노동
- 4) 벌금이라는 이름의 갈취
- 5) 임금 떼먹기

##### 2.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인권 실태 2

- 1) 멈추지 않는 '컨베이어벨트 노동'
- 2) 흔들리는 건강, 피곤에 찌든 일상
- 3) 인격 모독과 폭력
- 4) 성폭력의 위험
- 5) 부당 서약 강요

#### III.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시각 전환의 필요성

1. 청소년들이 말하는 아르바이트 이유
2. 아르바이트 경험이 기억되는 방식

#### IV. 정부와 사회에 전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

1. 최저임금 인상
2. 노동부 근로감독 강화와 안전한 권리회복절차 보장
3. 평등한 일자리 창출

# I. 들어가며

## 1. 면접조사의 목적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청소년 시간제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봄과 동시에 당사자들의 요구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 면접조사에 나섰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 생생한 증언을 청취하는 것이야말로 정확한 실태에 접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청소년들은 왜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의 시간제 노동에 나서고 있을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 어떤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고 그 경험은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당사자들은 청소년의 노동인권 실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정부와 사회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이번 면접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다.

## 2. 조사 시기

면접조사는 2008년 5월 한 달 동안 진행됐다.

## 3. 조사 대상

면접조사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면접조사를 통해 만난 13명의 청소년 중 인천에 살고 있는 3명을 제외하면 모두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면접에 응한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이름과 소속은 두문자로 처리했고 고용업체의 이름도 경우에 따라 밝히지 않았다.

<표 1> 면접 참여자 성별 분류

| 성별  | 남 | 여 | 전체 |
|-----|---|---|----|
| 인원수 | 4 | 8 | 12 |

<표 2> 면접 참여자 계열별 분류

| 계열별 | 중학생 | 고등학생 | 방송통신고 | 탈학교 | 전체 |
|-----|-----|------|-------|-----|----|
| 인원수 | 1   | 9    | 1     | 1   | 12 |

□ 면접 참여자의 아르바이트 현황

| 사례 번호 | 성별 | 나이  | 소속  | 지역 | 아르바이트 시기    | 사용업체                 | 일의 종류         |
|-------|----|-----|-----|----|-------------|----------------------|---------------|
| 1     | 여  | 19세 | 비고  | 서울 | 04년 초~가을    | 세곡동 주유소              | 주유, 세차        |
|       |    |     |     |    | 08.04~현재    | 신림동 편의점 (FamilyMart) | 계산, 물품정리      |
| 2     | 남  | 19세 | 탈학교 | 서울 | 07.08       | 주유소                  | 주유, 세차        |
|       |    |     |     |    | 07.10~08.04 | 목동 패스트푸드점(맥도날드)      | 주방            |
| 3     | 남  | 16세 | ○중  | 서울 | 08.04~현재    | 신림동 순대타운             | 서빙, 설거지, 주방보조 |
| 4     | 남  | 18세 | ㄷ고  | 서울 | 08년 초       | 결혼식 뷔페               | 서빙, 설거지       |
|       |    |     |     |    | 08.4~현재     | 음식점(해물찜)             | 서빙, 설거지       |
| 5     | 남  | 18세 | ㄷ고  | 서울 | 07년 초       | 제조공장                 | 조립            |
|       |    |     |     |    | 08.04~현재    | 치킨집                  | 전단지 돌리기       |
| 6     | 여  | 19세 | ㄹ고  | 인천 | 08.03~현재    | 패스트푸드점(롯데리아)         | 카운터           |
| 7     | 여  | 18세 | ㄹ고  | 인천 | 08.04       | 숯불고기 집               | 서빙, 설거지       |
| 8     | 여  | 18세 | ㄹ고  | 인천 | 08.04       | 숯불고기 집               | 서빙, 설거지       |
| 9     | 여  | 19세 | ㄱ고  | 서울 | 07.여름       | 노원동 샤브샤브 뷔페          | 주방, 서빙, 설거지   |
| 10    | 여  | 19세 | ㄱ고  | 서울 | 07.03~07.06 | 건대입구 패스트푸드점(롯데리아)    | 카운터           |
|       |    |     |     |    | 08.04~현재    | 음식점(고기집)             | 서빙, 주방보조      |
| 11    | 여  | 19세 | ㄱ고  | 서울 | 07년 초       | KOEX 음식점(피로연, 돌잔치)   | 서빙, 설거지       |
| 12    | 여  | 19세 | ㄱ고  | 서울 | 08년 현재      | 장안동 대형할인마트 (바우하우스)   | 주차 안내         |

## II.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인권 실태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노동조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사례 번호 | 성별 | 나이  | 사용업체             | 임금(시급)  | 일하는 시간                                  | 쉬는 시간             |
|-------|----|-----|------------------|---|---|-------------------|
| 1     | 여  | 19세 | 주유소              | 2,800원(04년)   | 월~금 오전 7~오후 7시 12시간<br>토요일 오후 2시 -새벽 2시 | 밥 먹는 시간 잠깐        |
|       |    |     | 편의점 (FamilyMart) | 3,000원(08년)   | 월~금<br>오후 2시~밤 9시                       | 화장실 2번 다녀오는 시간    |
| 2     | 남  | 19세 | 주유소              | 3,480원(07년)   | 아침 7시~오후 4시<br>평균 9시간                   | 밥 먹는 시간 15-20분    |
|       |    |     |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    | 3,770원(08년)   | 오전 10시-오후 4~5시(평균 6시간)<br>(주 3~4회)      | 20분               |
| 3     | 남  | 16세 | 신림동 순대타운         | 3,000원(08년)   | 오후 5시-9 or 10시<br>(평균 4시간, 주 3회 정도)     | 밥 먹는 시간           |
| 4     | 남  | 18세 | 결혼식 뷔페           | 4,000원<br>(주말, 08년)   | 오후 1시-밤11시<br>(평균 10시간)                 | 밥 먹는 시간           |
|       |    |     | 음식점 (해물찜)        | 4,000원<br>(주말, 08년)   | 오후 3시-밤10시<br>(토, 일 근무)                 | 4시쯤 점심 먹는 30분     |
| 5     | 남  | 18세 | 제조공장             | 잘 기억나지 않음.<br>20일 넘게 일하고<br>20만원 조금 넘게<br>받는다고 들었음<br>(07년) | 오전 9시-오후 6시(매일)                         | 점심 시간 30분, 중간 30분 |
|       |    |     | 치킨집              | 500장당 3,700<br>원~4,000원(08년)                                | 유동적<br>(하루 2시간 이상)                      |                   |
| 6     | 여  | 19세 | 패스트푸드점 (롯데리아)    | 3,770원(08년)   | 오후 ?시-밤 11시<br>새벽 6시-오후4시               |                   |
| 7     | 여  | 18세 | 숯불고기 집           | 평일 3,500원/ 주말 4,000원(08년)                                   | 오후 6시-밤 11시<br>주말에는 더 오래                |                   |
| 8     | 여  | 18세 | 숯불고기 집           | 평일 3,500원/ 주말 4,000원(08년)                                   | 오후 6시-밤 11시<br>주말에는 더 오래                |                   |
| 9     | 여  | 19세 | 샤브샤브 뷔페          | 잘 기억나지 않음.<br>13시간 일하고 3<br>만원 아래로 계산<br>(07년)              | 오전 9시-밤 10시                             | 밥 먹는 시간           |
| 10    | 여  | 19세 | 패스트푸드점 (롯데리아)    | 3,480원(07년)   | 오후 5시-밤12시<br>(하루 쉬고 매일)                | 4시간마다 30분         |
|       |    |     | 음식점 (고기집)        | 4,000원(08년)   | 오후 6시-밤 11시<br>(금,토,일)                  |                   |
| 11    | 여  | 19세 | 음식점(피로연, 들잔치)    | 3,400원(07년)   | 오전 11시-오후5시(주말)                         |                   |

|    |   |     |                   |             |                    |             |
|----|---|-----|-------------------|-------------|--------------------|-------------|
| 12 | 여 | 19세 | 대형할인마트<br>(바우하우스) | 3,500원(08년) | 오후 12:30-밤 10시(주말) | 1시간씩 교<br>대 |
|----|---|-----|-------------------|-------------|--------------------|-------------|

## 1.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인권 실태 1

### - 임금 문제

#### 1)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초저임 노동 - “지금까지 최저임금에 맞춰준 적 한 번도 없었어요.”

2008년 한 해 동안 책정된 최저임금은 시급 3,770원(8시간 근무 기준 일급 3만160원)이다. 2007년의 최저임금은 시급 3,480원이었다. 그런데 면접조사를 통해 만나본 상당수의 청소년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었다. 하루에 한두 시간을 공짜로 부림을 당하고 있는 셈이었다.

“최고로 많이 일했을 때는 11시간 일했고, 그 다음날에도 1시부터 11시까지 일했어요. 그리고 (3일 일한 대가로) 4만 얼마 받았어요.” (사례 4, 남, 출장뷔페)

“최저임금법 이런 거 있어도 막상 알바 하는 데 가보면 2천5백 원 이렇게 주고 그래요. 최저임금 만큼이라도 줬음 좋겠어요.” (사례 9, 여, 뷔페)

심지어 한 청소년은 13살 전단지 돌리기 아르바이트부터 19살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다양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해 보았지만 한 번도 최저임금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저는 최저임금까진 바라지도 않았어요. 여태까지 최저임금을 맞춰준 적이 없으니까요, 한번도. 그래도 적어도 3천5백 원은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3천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요즘 PC방도 3천원은 안 줘요. 점장님한테 엇그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2천8백 원인데 3천원으로 올린 거니까 좋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변이 다 비슷해요. 한 곳이 올려야 주변도 다 오르는 거예요. 3개월 지나면 (시급) 백 원 올려준대요. 6개월 지나면 2백 원 올려주고... 그러면 6개월 후에 3천2백 원 받는 거예요.” (사례 1, 여, 편의점)

나이가 어릴수록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중학생 아르바이트 경험자들은 더 낮은 임금 수준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처음 (시작할 때) 시급이 2천5백 원, 지금은 3천원. 그리고 보너스라면서 5백 원에서 3천 원 사이에서 돈을 쥐어줘요. 그날 기분도 있고 일을 얼마나 빠 빠지게 했나, 그런 거에 따라서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비정기적으로 줘요. ...되게 조금 준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알바도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는 그나마 시급이 센 편이니까. 전단지나 그런 거에

비하면 정기적이고... 내 노동이 착취당한다는 느낌이긴 한데 어쩔 수 없어서요.” (사례 3, 남, 순대촌)

“우리 학교 앞 떡볶이 집 시급이 1,500원인가 그래요. 거기서 중학생들 많이 일하던데……”(사례 11, 여)

주차 안내 일을 하는 한 청소년은 한 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면서 총 10시간을 일하면서도 시급 3,500원을 받고 일하고 있었다. 이 청소년은 대기시간을 노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10시간으로 계산해 주니까 최저임금 미만이라도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기시간도 일하는 시간에 포함시키는 게 마땅한 데다 8시간 이상 노동에 대한 연장수당도 계산해주지 않는 상황이라 사실상 업체로서는 남는 장사인 셈이다.

“주말에만 가는데요 주말 12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일해요. 시급이 3,500원이에요.”

“최저임금이 3,770원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면접자)

“네. 최저임금보다 적기는 한데 그만큼 일이 쉬워요. 시급은 열 시간으로 쳐주는데 일하는 시간은 다섯 시간이에요. 한 시간 일하고 한 시간 쉬고 교대하면서 일해요. 적당한 것 같아요. 그보다 더 많이 주면 좋구요.” (사례 12, 여, 대형할인마트)

이와 같은 임금 수준에 대해 청소년들은 부당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다. 서울 신림동 순대촌에서 일하는 한 청소년은 시급을 깎아서 주면서 선심 쓰듯 보너스를 조금 얹어주는데 사실상은 한 시간을 공짜로 부러먹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솔직히 일하는 게 재밌어서 다니는 거지 시급 보고 다니는 거라면 안 다녔어요. 점장님이 잘해 주시고 일하면서 사람들하고 배우는 게 즐겁고 재밌어서 다니는 거지 시급 받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최저임금법이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그만큼은 줬으면 좋겠어요.”(사례 1, 여)

“최저임금이 3,770원이면 내 시급이 3천원이니까, 보통 하루에 다섯 시간 일한다고 치면 한 시간을 공짜로 부러먹고 착취를 하고 있는 건데... 너무 화가 나요. 내 한 시간 시급 어디로 간 거지?” (사례 3, 남, 순대촌)

특히 한 청소년은 최저임금도 주지 않으면서 청소년에게 일을 시키면서 ‘그래야 단가가 맞는다.’고 얘기하는 현실에 대해 심각한 분노를 표현했다.

“대학생처럼 보이는 아는 고등학생이 순대촌에서 알바를 구하는데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대학생이예요? 여기 대학생 단가 안 맞아서 안 쓴다. 대학생이면 차라리 롯데리아 같은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서 가서 일하라’고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 얘기 들었을 때 ‘헐~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소년들은 단가가 맞는다는 얘기인데 그 단가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니까....

청소년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무시 받는 존재들이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청소년들은 무시해도 되고 무시할 수 있는 존재니까 최저임금도 안 되는 시급을 주면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닐까 하는... 그 얘기 듣고서 화도 났어요. 어이도 없고.” (사례 3, 남, 순대촌)

## 2) 하늘의 별 따기인 시간 외 수당 - “11시 넘어서까지 일해도 시급은 똑같아요.”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피로가 누적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사고를 당할 위험성도 높아진다. 그래서 시간 외 노동(연장, 야간, 휴일 노동)에 대해서는 보통 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연장, 야간, 휴일 노동이 서로 겹치는 경우라면, 각각 1.5배씩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많은 청소년들이 시간외 수당의 존재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고, 실제 시간 외 노동을 한 경우에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야간(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에 연장노동을 시키는 거라면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을 각각 0.5배씩 추가로 받아야 하지만, 이는 청소년들의 현실과는 아주 거리가 먼 얘기이다.

“2800원 받고 일했어요. 하루에 열두 시간 이상씩 일한 것 같아요.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도 두 시인가 출근해서 밤 12시 넘을 때까지 일을 했으니까. 주유소가 마감할 때까지 1시, 2시까지 일을 했어요. 그래도 시급은 똑같아요. 나중에 시급이 백 원 올랐어요. 2천9백 원 받을 때까지 일을 했으니까.” (사례 1, 여, 주유소)

“아휴 시간 일해도 시급을 더 쳐주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사례 2, 남, 주유소)

“결혼식장 비슷한 곳이어서 청소년들이 몇 백 명 정도 일하죠. 세팅하고 마지막까지 치우고 그러면 일이 늦게 끝나요. 밤 11시까지 일할 때도 시급은 똑같았어요.” (사례 4, 남, 출장뷔페)

“날씨가 더울 때는 손님이 많아서 학교 끝나고 일찍 가야 돼요. 밤까지 사람이 많아요. 늦으면 11시 반까지 일해요. 서빙도 하고 이모님 도와드리는 것도 하고... 시급 4천원 받아요.”

“10시 넘으면 돈을 좀 더 줘요?” (면접자)

“아니요. 10시 이후에도 4천원 그대로예요.” (사례 10, 여, 고기집)

## 3) 강요되는 무임 노동 - “일하는 거 똑같이 하는데 돈 안 줘요.”

면접 참여자 중 세 명은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아예 아무런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을 한 경험도 있었다. 교육기간이라는 이름으로 원래 주기로 한 시급보다 적게 시급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말로는 교육기간이라고 하면서도 특별한 교육 없이 공장 현장에 투입해 노동력을 뽑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틀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는 돈을 안주는 거예요. 저는 엄연히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물품 옮기고 그랬는데 아예 없던데요? 인수인계 해주는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시급에)

안 들어간대요.” (사례 1, 여, 편의점)

“3일간 교육기간 거치고 4일부터 시급을 받았어요. 교육기간은 무봉이예요. 일하는 거는 똑같이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사례 6, 여, 패스트푸드점)

“처음 시작할 때 시급이 2천5백 원이었어요. 이삼 일 동안은 연습하는 기간이니까 그것만 받고 일해라 그러면서…….”(사례 3, 남, 순대촌)

“3천 얼마 받는다고 알고 갔는데요, 막상 가보니까 교육생이라고 2천 얼마 주고…….” (사례 9, 여, 뷔페)

#### 4) 벌금이란 이름의 갈취 - “다친 것도 서러운데 오늘 알바비 없다 그래요.”

심지어는 청소년들의 실수나 규칙 위반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묻고, 임금에서 손해액을 제해버리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었다. 노동자가 일을 하다 실수를 해서 손해를 입혔거나 계약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에서 손해액을 제하고 주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우선 줘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소한 실수에 대해 과중한 벌금을 요구하거나 무보수 노동을 강요하는 일들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다.

“미리 달력 스케줄에 내가 언제 안 된다는 걸 써놔야 하는데요, 제가 깜빡하고 시험이 있어서 안 되는데 안 써놓은 거예요. 시험이 아침 10시 반부터 있는데 그날 제가 새벽6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가 있었거든요. 겹치잖아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애가 있어요. 랭크도 같아요. 개량 바꾸면 괜찮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꾸면요 10만원을 내라는 거예요. 월급에서 까는 거예요. 또 실수할 때마다 도장을 찍어요. 근무를 변경 시에는 도장을 10개 받아요. 도장이 10개 쌓이면 하루 5시간 무봉으로 뛰는 거예요. 무봉 뛰는 건 자기가 원할 때가 아니라 스케줄 짜는 매니저님이 넣어주세요. 언제 근무하라고…. 그것 때문에 10만원을 떼일 뻔 했고 무봉으로 5시간 뛰어야 했고 시험을 못 볼 뻔 했고…. 매니저님한테 10만원 안 내게 해달라고 계속 부탁해가지고 이번에는 봐주시고 다음번엔 실수할 경우에는 진짜 돈을 내기로 했죠.”

“10만원이면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면접자)

“네. 10만원 벌려면 일주일 넘게 고생을 해야 되는데…….”

“다른 애도 무봉으로 뛰는 경우 봤어요. 웃이 지저분하다 그러면 직급이 높은 오빠들이, 바이스(vice)나 그런 오빠들이 체크를 해두면 30분, 1시간씩 무봉으로 뛰는 경우도 있어요. (규칙이) 탈의실에 A4용지에 붙어져 있어요.” (사례 6, 여, 패스트푸드점)

“불판을 잡고 돌리는 건데요 뜨겁잖아요? 떨어뜨려서 손을 댔어요. 근데 고모님(아르바이트 청소년 관리하는 사람 - 면접자 주)이 비싼 거 그랬다고 ‘야, 너. 오늘 알바비 없다, 알바비 없어’ 그래요. 너무 서럽잖아요. 손도 다치고 돈도 못 받고…. 저희 엄마 또래 아줌마들이 모여 갖고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그 손님들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줄 건 줘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화장실 가서 울고 오니까 (그 고모가) ‘너 돈 안줄까봐 그러냐? 줄게’ 그래요.” (사례 8,



여, 숯불고기 집)

“친구가 알바에 30분 지각을 했는데 지각비를 깎였대요. 연극 티켓 파는 일인데 지각해서 5만원 까였대요.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괜히 그러는 거예요. 개가 잘못은 했는데 5만원은 아니죠.” (사례 11, 여, 대형할인마트)

심지어는 당사자의 실수가 아닌데도 청소년의 실수로 몰아가서는 임금에서 손해액을 제해버린 사례까지 있었다.

“만 16살 때 주유소 알바를 시작했었어요. 너무 기름 냄새에 찼다 보니까 이게 내 몸인가 싶고 어지럽고 그래요. 내가 지금 받은 게 돈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럴 정도로 많이 어지럽고 힘들어서 계산 실수를 많이 하다보니까 결국 잘렸어요. 일주일 정도 일하고 나서 막상 받은 돈은 2만5천원이었어요. 원래는 20만 원가량 받아야 되는 건데 내가 실수한 걸 제한 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피러스인가 고가의 차가 계산을 안 하고 도망을 갔는데 그걸 제 실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는 그 사람(운전자)이 6만원 치라고 했는데 제가 8만원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2만원이 펄크가 났다고 2만원 중에 1만원 물고... 사실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너무 찼어 있을 뿐더러 바쁜데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해요? 또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얼마 채워달라고 했는데 가득이 넣어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기계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저한테만 책임을 물리더라고요. 실수한 돈 다 빼고 나니까 일주일 동안 일하고 받은 돈이 2만 5천원이었어요.”

##### 5) 임금 떼먹기 - “수십 번 전화했는데도 못 받았어요.”

임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거나 아예 떼먹은 경우도 있었다.

“20일 좀 넘게 일했는데 원래 20만원 넘게 받아야 하는데 십 몇 만원 밖에 못 받았어요. 나중에 엄마가 통장 확인했는데 적게 들어왔어요. 그때 제 통장이 없었는데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가고 저한테 온 거는 2-3만 원 정도. 가방 하나 사고 말았어요.” (사례 5, 남, 제조공장)

“3일 일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9만원 아래예요. 그 사람들이 장부에 (출근) 기록을 해요. 근데 하루치를 잃어버렸대요. 못 찾겠다고 돈 못 준다고, 제 것만 없어졌대요. 다 같이 썼는데...”

“주위에 출근한 걸 증명해줄 사람이 있잖아요?” (면접자)

“네, 친구도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것도 다 못 받았어요. 계속 안 줘서 전화를 했어요. 계좌번호를 불러 달래요. 안 들어와요. 전화를 또 하니깐 또 불러 달래요. 그게 수십 번이었어요. 아예 못 받았어요. 받고는 싶는데 더럽고 치사해서... 3학년 된 겨울인가(올해 초) 돈 받으러 또 갔었는데요 계좌번호를 불러 달래요. 근데 아직도 못 받았어요.” (사례 9, 여, 뷔페)

“(시급이) 3400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못 받았어요. 인터넷에 쳐 봤더니 저 말고 못 받은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전화를 해 봤는데요, 넣어 준다고 해놓고 넣어주지도 않고... 노동부에 신

고한다고 그러니까 넣어준다고 계좌번호를 불러 달래요. 근데 또 안 넣어주는 거예요. 준다는 지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사례 11, 여, 피로연장)

심지어는 임금을 며칠 후 통장으로 받지 않고 당일 현금으로 받을 경우에 30%를 떼고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가서 행사가 쪽 있으면 계속 하는 거고 하나 끝나고 더 없으면 돈을 지급해줘요. 통장으로 받으면 이틀 후에 들어오는 건데, (그날) 바로 받으면 30%를 떼고 줘요. 최고로 많이 일했을 때는 11시간 일했고, 그 다음날에 1시부터 11시까지 일했어요. 그리고 (3일 일하고) 4만 몇 천 원 받았어요.” (사례 4, 남, 출장뷔페)

이처럼 임금의 일부나 전액을 떼어먹는 업주들은 청소년들이 제대로 항의하거나 대처하지 못할 거라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것이었다. 청소년이 직접 항의를 했을 경우에는 화를 내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던 업주가 담임교사가 나서자 곧바로 지급한 사례는 역설적으로 업주들이 청소년을 얼마나 얕잡아 보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돈을 계속 안 줘서 담임한테 얘기를 했어요. 담임선생님이 자기 있는데서 전화를 해보래요. 전화를 했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말도 없이 그만둬 놓고 지금 돈 받으려고 그러는 거냐고… ‘매달 10일 날 받는 거니까 그때 받으러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달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야 끊어. 나중에 와’ 그러는 거예요. 가기 무서웠어요. 너무 화내고 그러시니까. 가니까 사장님이 화내시면서 야 ‘여기다 계좌번호 적고 가. 야, 너네 안가?’ 그래요. 제 친구가 너무 화나서 욕을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따라 나왔어요. 그때 (담임한테) 전화가 왔는데 종소리가 들렸거든요. 학교라는 거 눈치 채고 돈 준다고… 그래서 바로 계좌로 받았어요.” (사례 8, 여, 숯불고기 집)

“여자 남자 가리지 않고 무거운 것도 다 같이 들라고 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 돈까지 떼먹고… 너무 학생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구요. 저희가 어리잖아요. 아무 말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어른이라면 대응할 텐데 학생이라고 무시하고 돈도 안주고… 학생이니깐요 더 돈을 확실히 줘야 할 것 같아요. 학생이 공부하면서 자기 용돈 조금이라도 벌어서 쓰려고 하는 건데 그것까지 떼먹으면 그렇잖아요.” (사례 11, 여, 피로연장)

## 2.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인권 실태 2

### 1) 멈추지 않는 ‘컨베이어벨트 노동’ - “일한 만큼 준다면 한 달에 2백은 줘야 해요.”

현행 근로기준법 제69조에서는 만 18세 미만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을 1일 7시간, 주 40시간(상시노동자 50인 미만의 경우 주 4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

에 의하여 1일 1시간, 주 6시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청소년들이 특히 주말이나 방학 기간에 장시간 중노동을 강요받으며 일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학기 중에도 학교 수업이 끝나고 숨 돌릴 겨를도 없이 4~5시간 이상씩 혹사당하고 있기 때문에 피곤에 절은 생활을 보내야 한다.

| 사례 번호 | 성별 | 나이  | 사용업체                | 일하는 시간                                 | 쉬는 시간                |
|-------|----|-----|---------------------|--|----------------------|
| 1     | 여  | 19세 | 주유소                 | 주중 오전 7시 ~ 오후 7시<br>토요일 오후2시~새벽2시      | 밥 먹는 시간 잠깐           |
|       |    |     | 편의점<br>(FamilyMart) | 주중 오후 2시 ~ 밤 9시                        | 화장실 2번 다녀오는 시간       |
| 2     | 남  | 19세 | 주유소                 | 주중 오전 7시 ~ 오후 4시                       | 밥 먹는 시간<br>15-20분    |
|       |    |     | 패스트푸드점(맥도<br>날드)    | 오전 10시 ~ 오후 5시<br>(평균 6시간씩 주 3~4회)     | 20분                  |
| 3     | 남  | 16세 | 신림동 순대타운            | 오후 5시 ~ 밤 9시나 10시<br>(평균 4시간, 주 3회 가량) | 밥 먹는 시간              |
| 4     | 남  | 18세 | 결혼식 출장뷔페            | 오후 1시 ~ 밤 11시<br>(평균 10시간)             | 밥 먹는 시간              |
|       |    |     | 음식점(해물찜)            | 오후 3시 ~ 밤 10시<br>(토, 일 근무)             | 4시쯤 점심 먹는<br>30분     |
| 5     | 남  | 18세 | 제조공장                | 오전 9시 ~ 오후 6시(매일)                      | 점심시간 30분, 중<br>간 30분 |
|       |    |     | 치킨집                 | 유동적<br>(하루 2시간 이상)                     |                      |
| 6     | 여  | 19세 | 패스트푸드점(롯데<br>리아)    | 오후 ?시 ~ 밤 11시<br>새벽 6시 ~ 오후4시          |                      |
| 7     | 여  | 18세 | 숯불고기 집              | 오후 6시 ~ 밤 11시                          |                      |
| 8     | 여  | 18세 | 숯불고기 집              | 오후 6시 ~ 밤 11시                          |                      |
| 9     | 여  | 19세 | 샤브샤브 뷔페             | 오전 9시 ~ 밤 10시                          | 밥 먹는 시간              |
| 10    | 여  | 19세 | 패스트푸드점(롯데<br>리아)    | 오후 5시 ~ 밤 12시<br>(하루 쉬고 매일)            | 4시간마다 30분            |
|       |    |     | 숯불고기 집              | 오후 6시 ~ 밤 11시<br>(금,토,일)               |                      |
| 11    | 여  | 19세 | 음식점(피로연)            | 오전 11시 ~오후5시(주말)                       |                      |
| 12    | 여  | 19세 | 대형할인마트<br>(바우하우스)   | 오후 12:30 ~ 밤 10시(주<br>말)               | 1시간씩 교대              |

사업주들은 청소년들을 원하는 대로 쉽게 부러먹을 수 있는 노동력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들에게 연장 노동과 중노동을 쉽게 강요한다. 그것도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으면서 몰아치는

경우도 흔하다. 청소년 당사자들도 워낙 시급이 낮고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가혹한 조건과 장시간 노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낮은 임금이 장시간 노동을 부르는 조건이 되고 있는 셈이다.

“애들 끝날 때 네 시, 다섯 시, 여섯 시가 제일 바쁠 때인데 혼자 해요. 다섯 시에 물건 들어오면 물품 체크해가면서 손님 받으려면 진짜 정신없거든요.” (사례 1, 여, 편의점)

“(주유소 일할 때는) 하루에 열두 시간 이상씩 일한 것 같아요.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도 두 시인가 출근해서 밤 12시 넘을 때까지 일을 했으니까. 주유소가 마감할 때까지 새벽 1시, 2시까지 일을 해야 했으니까. 주유소라는 곳이 진짜 많은 노동을 필요로 해요. 일한 만큼 돈을 준다면 한 달에 2백은 쥐야 돼요.”(사례 1, 여, 주유소)

“차가 정말 불티나게 계속 와요. 제발 (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너무 힘들게 일했죠. 주문 받고 기름 넣어주고 카드나 돈을 받아서 영수증 주고, 주유할 동안 재떨이를 받아주거나 쓰레기를 받아서 버려주거나... 차가 계속 들어오니까 앉아있어 봤자 10분 이상 앉아있었던 적이 없어요. 7월이었으니까 엄청 더운데다 기름 냄새까지 켜지...” (사례 2, 남, 주유소)

“원래 11시까지잖아요. 그럼 10시부터는 손님 안 받아야 해요. 갈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손님을 계속 받는 거예요. ‘야 너네 12시까지 일해. 돈 더 줄게’ 그러면서... 가고 싶다는 얘기도 못하고 12시 넘어서 끝났어요.” (사례 7, 여, 숯불고기 집)

청소년 노동력에 거의 의존해 운영되고 있는 패스트푸드점의 경우에도 혹사가 일어나고 있다. 노동부의 집중 근로감독이 여러 해 동안 이루어진 결과 대다수 패스트푸드점들이 청소년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의 강도에 비하면 엄청 험값으로 부리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주방에 의자 같은 것도 없고 테이블이나 쓰레기통 위에 앉았다가 매니저한테 걸리면 엄청 욕을 먹어요. 일이 없다 하면 다른 일들을 막 시켜요. 어디를 닦아라, 청소해라. 절대 쉬는 시간 없이 일을 계속 시키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사례 2, 남, 패스트푸드점)

“학교 다니면서 알바 하기가 제일 힘들었고 서비스 웃으면서 손님 대하는 것도 힘들었고... 학교 끝나고 바로 가서 자유시간 같은 게 없었어요.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다리가) 아팠죠. 웃어야 되는데 손님들이... 되게 이상한 손님들 많아요. 뒤에서 울다가 손님들 오면 바로 웃은 적도 있어요.” (사례 10, 여, 패스트푸드점)

특히 청소년들은 마음 편히 쉴 시간조차 없다는 점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쉬는 시간(휴게)은 일하는 도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인 경우 최소 30분 이상(8시간인 경우 최소 1시간 이상)의 쉬는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의 경우는 대개 법정 쉬는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 하루 12시간 이상을 꼬박 서서

일하면서도 20-30분 밥 먹는 시간이 유일한 쉬는 시간인 경우도 있어 노동착취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중간에 쉬는 시간 없고 퇴근할 때까지 화장실 두 번 정도 다녀오는 게 전부예요. 교대자가 올 때까지 계산대 안에서 나오지 못해요. 틈틈이 앉기는 하는데 CCTV 때문에... 손님을 잘 안 받는 경우가 발생하면, 점장님이 아침에 (테이프를) 돌려보고 꾸중하시니까.” (사례 1, 여, 편의점)

“아침 7, 8시쯤 도착해서 일을 시작해서 끝나는 게 4, 5시. 아홉 시간 일하는 거면 적어도 한 시간은 쉬는 시간을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밥 먹으러 갔다가 다 먹으면 나가야 하는 거고...” (사례 2, 남, 주유소)

“쉬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손님 없을 때 잠깐 앉아 있다가도 손님 오면 바로 일어나야 하고... 손님 없어서 잠깐 쉬고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 돈 버니까 좋지?’ 그러고... 힘들어 죽겠는 상태에서 알바를 갔는데, 얼굴만 봐도 알 텐데 ‘왜 일 안 찾아서 하냐’고 화내고... ‘순대촌이 옛날에 비해 너무 널럴해졌어. 내가 기강을 안 잡아서 그래. 애들 기합 좀 줘야 해’ 그런 말 들...” (사례 3, 남, 순대촌)

“아침 9시부터 일해서 밤 10시까지. 아침에 가면 캘리포니아 롤을 계속 만들어야 해요. 몇 십 개나. 팔빙수도 계속 만들고 만두 계속 찌고 손님들이 심부름 시키면 갖다 주고... 부엌에서도 일하고 홀 서빙도 하고... 진짜 다리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손님이 진짜 많았어요.”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면접자)

“네. 중간에 몰래 몰래 계단 가서 쉬고 그랬어요.” (사례 9, 여, 뷔페)

“결혼식을 하면요 계속 서 있다가 사람들 나와서 먹을 때 되면 갖다 주고 그 사람들 나가면 다 치워야 하고... 그 일 다 끝나면 밥을 먹는 거예요. 오후 다섯 시쯤.” (사례 11, 여, 피로연장)

## 2) 흔들리는 건강, 피곤에 찌든 일상 - “마스크 써도 되냐니까 안 된대요.”

쉬는 시간도, 마음 편히 설 공간도 없는 상태에서 바빠 움직이다 보면 청소년들은 근육통과 만성적인 피로에 찌들게 된다.

“학교 갔다가 거기로 곧장 가니까 지친 몸 이끌고 가는 것도 힘들고, 손님이 없는 시간 때에도 아줌마들이 계속 압박을 줘요. 편하게 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조금 있으면 손님들이 몰려오는 시간이라 철판 닦고 설거지하고 판 정리하고 그러면 완전히 정신없이 지나가고... 좀 실수하면 욕 얻어먹고... 알바 끝나면 어깨 아프고 계속 서 있어야 하니까 다리도 아프고 그래요. 처음 일할 때 근육통이 심해서 잘 못 움직이는 상태였고 그렇게 녹초가 된 상태로 집에 가서 대충 씻고 자면 바로 엎어져서 잠들고 다음날 잘 못 일어나고... 가장 힘든 건 일 중에는 철판 닦는 거. 그 다음엔 쉬지 못하게 하는 심리적 압박.” (사례3, 남, 순대촌)

일을 빨리 빨리 처리할 것을 끊임없이 재촉 받다 보니 몸을 돌볼 여유도 없어지고 산업재해의 위험에도 노출되게 된다. 일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지도 않을뿐더러 마스크 등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하는 것도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손님을 가장해 본사에서 감독을 나올 경우에는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하루 종일 서서 대기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얼마마다 미스터리 샤퍼(Mystery Shopper, 위장고객)가 내려와요. 그러면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돼요. 정말 울고 싶어요. 화장실 갈 때도 눈치 보면서 가야 되고... 주유소 일하면서 발톱이 죽어 갔고 이상하게 나거든요. 운동화에 기름 흘리면 기름 다 스며들고 일 끝나고 나서 코를 풀면 정말 휴지가 까매요. 좀 지나고 나면 후유증이 생겨요. 그거랑 비슷한 냄새 맡으면 뒷골이 짹 당겨요. 휘발유 흘러났고 신발에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일 끝날 때쯤 내 발톱에 기형이 온다는 걸 알았어요. 기름이 사람 몸에 진짜 독해요.”

“일하는 곳에서 기름이 사람 몸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면접자)

“아니요. 냄새가 워낙 심해서 마스크를 써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스크 썼다 벗었다 손님한테 얘기하고 다시 쓰고 그런 게 좀 그렇구요. 원래 장갑을 끼고 주유를 하는 건데 안 쓰고 일할 때가 더 많았어요. 바쁠 때는 그냥 맨손으로 하는 거예요. 일 끝나고 가면요 여기(손등을 가리키며)가 다 벗겨져요.” (사례 1, 여, 주유소)

“화상 문제. 프라이팬 가까이에서 고기를 굽거든요. 프라이팬이 위에도 달려있고 압축을 하면서 구워지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손이 닿아서 화상을 많이 입었었어요. 저도 그랬고 다른 알바생들도 그렇고... 뜨거운 걸 만질 때는 안전장비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비닐장갑 두 개 끼고 그냥... 장비가 비닐에 비해 확실히 비싸겠죠. 많이 바쁠 때 제대로 못하면 엄청 혼나거든요. 내가 (두꺼운 장갑을) 사 와서 꺼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일이 늦어질뿐더러 걸리면 혼날 것 같았어요.” (사례 2, 남, 패스트푸드점)

“지하 주차장에서 일해요. 지하 몇 층에서 일할지는 그날그날 정해져요. 지하 6층까지 있는데 가위 바위 보로... 세 달 전부터 일했는데 일하다 보면 다리 아프고 허리도 좀 아파요.”

“환기구 같은 거는 잘 설치돼 있어요?” (면접자)

“잘 모르겠어요.” (사례 12, 여, 대형할인마트)

### 3) 인격 모독과 폭력 - “내가 왜 맞으면서까지 일을 해야 하나 싶었어요.”

청소년들은 업주들뿐 아니라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관리자들로부터 인격 모욕을 경험하고 있다고 털어냈다. 모든 노동자는 나이, 성별 등에 상관없이 작업장에서 인격을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공장 문 앞에서도 인권은 멈추어선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청소년 노동자들은 나이가 어리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놓여있어 반말과 언어폭력을 자주 경험한다. 이런 모욕적인 대우를 받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심리적 위축감이나 수치심을 느

끼거나 성인이나 기성사회에 대한 분노를 축적하기도 한다.

“좀만 잘못해도 주임(아르바이트 청소년 관리 책임자)이 욕하고 그러니까. 씨발 새끼, 이 새끼 등 계속해서 씨발 씨발 그랬어요. 거의 살인충동 같은 걸 느낄 정도로... 내가 여기 잘릴 때 재 뺨 한 대 때리고 잘리고 싶다 이럴 정도로... 일종의 복수심 같은 거. 진짜 그러고 잘리지는 못했지만...” (사례 2, 남, 주유소)

“거기서 접시를 떨어뜨린 적 있었거든요. 매니저가 욕을 막 해요. 미쳤냐는 등, 돌았냐는 등, 그것도 고객들이 계시는 앞에서... 되게 놀랐죠. 처음으로 일하는 건데... 말투도 툭툭 쓰는 편이고요, 매니저 자체가 거칠고 험해요. 반말하고...” (사례 4, 남, 결혼식 출장뷔페)

“이어폰을 끼고 일을 하는데 ‘씨발 새끼야 제대로 안 해?’ 이런 욕이 들려요. 욕 들려서 쳐다보면 다른 아르바이트 하는 애가 차장(아르바이트 청소년 업무 지시자)한테 혼나고 있어요. 어르고 청소년들 대하는 태도가 너무 확연히 틀려요.” (사례 9, 여, 뷔페)

청소년들은 심지어 물리적인 폭력에도 노출되곤 한다. 폭력 피해의 경험은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발견되고 있다.

“주유소에서는 맞아가면서 일을 했어요. 기름 흘렸다고... 그 직원이 남자였는데요, 사장이랑 자기 형이랑 잘 알아서 몇 년째 손을 잡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기름 넣다가 ‘오빠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그래놓고서는 뒤에 가서 ‘대가리에 똥만 들어갔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자기보다 나이가 여섯, 일곱 살 어려도 같은 사람이고 같은 곳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인데... 기름 총 쏘다가 몇 방울 흘렸어요. (호스) 안에 남아있는 걸 털다가... 근데 차가 가자마자 발로 허리를 차 가지고... 진짜 아팠어요. 파스 붙이고 일했어요. 제가 절뚝거리고 다니면 (그 직원한테 얘기 듣고) 사장님은 저를 와서 혼내는 거예요. 손님한테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나이 어린데 받아줬더니 아르바이트를 그렇게 하나 그런 식으로...” (사례 1, 여, 주유소)

“손님이 많아서 주문 받고 음식을 내주는 일을 하는데 겁칠 수도 있잖아요. 옷 갈아입는 데 불려서 욕하고 때리고 그랬어요. 매니저 바로 아래 있는 바이스라고, 좀만 더 하면 매니저 되는 언니가. ‘이 미친년아, 이 정신 나간 년아, 네가 지금 생각이 있니?’ 그런 식으로... 일 제대로 했는데 억울하게 맞은 거죠. 이런 데(팔꿈치 위쪽을 가리키며) 때릴 수 있는 데는 때리고요. 그 언니들은요 평소에 장난치듯이 하면서 머리도 때렸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냥 울었어요. 억울해서... 맞으면서까지 왜 내가 일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 했었죠. 그 언니랑 저랑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서 어리니까 쉽게 대하는 것 같았어요. 막 대하는 거... 일을 하다가 서로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저희같이 나이 어린 애들한테는 앞애다 대고 ‘재는 왜 저렇게 일을 한데...’ 이렇게 얘기하고 욕을 하는데, 저랑 같은 계급이었는데도 21살 언니한테는 안 그래요.” (사례 10, 여, 패스트푸드점)

정신적, 물리적 폭력이 아니더라도 청소년을 험한 노동력으로 부려먹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생각하기 힘든 비인간적인 대접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사례 1의 청소녀는 현재 일하는 편의점에서 더 이상 팔지 못하는 삼각김밥 하나로 저녁식사로 때워야 하고, 예전에 일했던 주유소에서는 보일러도 안 되는 냉골에서 한 겨울을 나야 했다.

“하물며 전단지를 돌려도 치킨집에서 밥을 시켜서 먹여줘요. 저희는 시간이 지나서 폐기된 삼각김밥 하나가 식량이에요. 인간적으로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아예 주지 말든가 줄려면 든든하게 배가 채워지게끔 줘야 하는데... 인간적으로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사례 1, 여, 편의점)

“주유소에서 일할 때는 거기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생활했었어요?” (면접자)

“네. 근데 보일러가 안돌아서 밤에 엄청 추운 데서 생활했었어요. 여자 따로 남자 따로 썼는데, 여자는 저하고 두 명. 매트리스 하나 깔려 있고, TV도 안 나와서 거울 올려놓는 용도로 썼었고, 옷걸이 하나 그게 다였어요. 밥상 하나랑.” (사례 1, 여, 주유소)

#### 4) 성폭력의 위험 - “딸 같아서 그러는 거라고...”

청소녀의 경우에는 성희롱을 비롯한 성폭력의 위험 속에 놓여있기도 하다. 세 명의 청소녀가 성폭력 경험을 털어놓았는데, 숙소가 제공되는 업체인 경우엔 더 위험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폭력의 위험은 청소녀들이 결국 일을 그만두도록 만듦으로써 추가 피해까지 낳고 있었다.

“주유소를 그만둘 때 좀 안 좋게 그만뒀어요. 거기 있는 직원이 저를 성희롱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저한테 모진 소리 하는 것도 못 이기겠고 하루 이틀 듣는 것도 아니고... 제가 숙식을 했었어요. 제가 먼저 출근을 하고 두세 시간 있다가 그 직원이 출근을 하는데 그 시간만 되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사례 1, 여, 주유소)

“(사장님이) 자연스러운 스킨십 같은 거. 딸 같이 여겨져서 그러는 거라고 하면서 팔 같은 데 만지고 허리 감싸고. 처음에는 얼어가지고 말도 못하다가 짜증나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어떤 언니가 신고해서 끌려갔었다면서 ‘너네도 사장님이 이런다고 신고할 거 아니지?’ 그러요. 못 들은 척 하고 일만 했어요.” (사례 7, 여, 숯불고기 집)

“(사장님이) 술 먹고 껴안기도 했어요. 옷 갈아입는 데가 따로 있어요. 거기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일을 그만둔 거예요?”(면접자)

“그것도 있고 거기 있는 고모님이라는 사람도 너무 짜증나서...”

“고모님이라는 사람이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 관리해요?”

“네.” (사례 8, 여, 숯불고기 집)

#### 5) 부당 서약 강요 - “다른 사람 구해놓고 나가래요.”



한 웨미리마트 편의점의 경우에는 고용 시에 부당한 서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기도 했다. 후임자를 구해야 할 책임을 노동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나 일정 기간 이상 일하겠다는 약속을 강요하는 것은 강제노동 강요로 볼 수 있다. 게다가 근로기준법에서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배상액을 명시하여 불법 서약을 강요하고 있는 경우였다.

“내가 그만두려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구해다가 앉혀 놓고 인수인계해주고 나서 나가야해요. 서약서 같은 걸 써요. 6개월 이상 일하겠다, 물품을 허락 없이 먹거나 가져가면 30배 이상 배상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명을 해요.” (사례 1, 여)

### Ⅲ.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시각 전환의 필요성

#### 1. 청소년들이 말하는 아르바이트 이유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의 시간제 노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청소년 노동자들이 최저임 수준에서 가혹한 조건과 부당한 대우를 견디며 일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미흡하기 이룰 데 없다. 청소년들은 공부나 하면 된다는 생각, 청소년 노동은 생계형이 아닌 용돈벌이를 위한 보조적 노동이라는 생각, 과잉소비를 위한 것인 만큼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 등이 청소년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에 눈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 청소년들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최저임금에서 예외가 되거나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또 만나본 청소년들 대개는 가족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면서 자신의 필요를 자기 힘으로 번 돈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힘들게 돈 버시는 부모님께 용돈 타 쓰는 것도 눈치 보이고 미안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실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버는 돈을 필수생활비에 쓰거나 부모님께 드리거나 독립을 위한 자금으로 저축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모님한테 받는 용돈이 있기는 한데 혼자서 편하게 쓰고 싶어서요. 내가 번 돈으로 사고 싶은 것 사고 쓰고 싶은 데 쓰려구요.”

“보통 용돈을 얼마 받는데요?” (면접자)

“2주마다 교통비까지 포함해서 3만 원 정도 받아요.” (사례 4, 남)

“집 형편도 안 좋고요 용돈 받을 때마다 집에서 엄마랑 막 싸우고 그래서... 옷 같은 것 사고 싶은 거 제대로 사지 못해서 마음 아프고... 월급 한 70(만원) 정도 받는다 하면 20은 엄마 드리고 나머지 절반은 통장에 넣어놓고 나머지는 쓰고 싶은 데 쓰고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례 5, 남)

“나 쓸 거 쓰고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안 하고 부모님도 좀 드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지금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 다 드려요. 그리고 용돈을 받아써요.” (사례 10, 여)

“사고 싶은 것 있는데 엄마가 힘들게 돈 버는데 엄마아빠한테 사달라고 하기 뭐하니까.” (사례 11, 여)

그룹홈에서 살면서 내년이면 자립을 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좀 더 독립적인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자기 힘으로 생활비를 버는 경우도 있다.

“40만 원 정도 받으면요 십만 원은 저금통장, 십만 원은 핸드폰 충전하고 제 용돈으로 써요. 나머지 2십 만원으로 필요한 게 있음 사고 남는 건 체크카드에 넣어둬요. 뭐가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지금은 이곳에서 지원 받으면서 사니까 빠듯하지는 않고 좀 여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내년이면 자립을 해야 될 나이에요. 자립을 하고 나면 정말 빠듯해요. 월세도 내가 내야하고 전기세 수도세도 내가 내야 하는 거니까 뽁뽁하죠.” (사례 1, 여)

“알바 하는 동안엔 용돈을 안 받았어요. 엄마가 취직을 했었는데 잘렸고, 엄마 아빠한테 부담을 계속 지우기도 싫었고…. 제가 착취당하는 것도 좋지는 않은데 엄마한테 계속 돈을 달라고 하는 건 엄마한테 제 그거를 맡겨버리는 거잖아요?” (사례 2, 남)

“아르바이트비 받으면 생활비에 보태고 움직이는 차비, 밥값이나 간식비로 쓰고…. 그러면 특별히 문화생활하고 여행 가고 그럴 만 한 돈이 없어요. 생활하기만 해도 벅차서…”

“청소년들 중에서도 처음 목돈을 벌어서 그런지 현재 시급에 만족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면접자)

“자기가 생활비 안 보태고 적금 들고 그런 용도로 쓰면 많이 받는다고 느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생활비로 들어가고 차비도 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현재 상황에 따라서 당장 필요한 돈이 다르니까 다르게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이 부모님 지원만 받고 사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례 3, 남)

## 2. 아르바이트 경험이 기억되는 방식

청소년들 가운데는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여기기보다는 노동을 통해 독립적인 생활인으로서 설 수 있는 자부심 같은 것까지 느끼고 있었다.

“이번 아르바이트를 돈은 적지만 감사하게 생각해야겠다고 한 게…. 이거 구하기 전에 되게 힘들었어요. 일이 너무나도 하고 싶은데,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열정이라는 게 내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곳에 가든지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사례 1, 여)

“아르바이트 하면서 좋은 거는요 제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하는 거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때요?” (면접자)

“안 좋아하는 어른들도 계시는데 저희 부모님은 좋아하세요. 돈 씹씹이도 알 수 있고, 노는 것보다는 아르바이트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사례 10, 여)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다수는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별로 좋지 않은 기억으로 떠올랐다. 임금을 떼이거나 부당한 대접을 받은 경우에는 상처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거나 또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걱정도 사로잡혀 있기도 했다.

“그렇게(욕먹으며 일하고 임금까지 떼이고) 일을 그만두고 나서 2, 3개월 후에 친한 아저씨한테 들으니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때 쫓아가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따질 수 있으려면 동등한 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압박을 받지 않는 관계 속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다시 가면 저를 다시 알바생으로 취급을 할 테고 너의 잘못이고... 그렇게 시뮬레이션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법을 보니까 2, 3년 후까지 (떼인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 같던데 다시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너무 억울하니까. 확실한 건 제가 다시 20만원을 돌려받겠다고 해도 그 사람들 때문에 생긴 상처를 치유할 순 없겠죠.” (사례 2, 남)

“거기서 싸우고 나왔어요. (아르바이트 관리 장부를) 계속 잃어버렸다고 해서 제가 따졌는데요. 차장인가 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쏘아붙이고 그래서 저도 짜증나서 나와 버렸어요. 그 만들 거라고 그러니까 빨리 가라고 그래요. 청소년이라서 쉽게 대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어른이 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알바하면 남의 돈 벌기 힘들어서... 또 안 줄까봐 알바 안 하게 됐어요. 버스비만 괜히 들고...” (사례 9, 여)

이처럼 생애 최초의 노동 경험이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하지 않으려면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이 제공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 IV. 정부와 사회에 전하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목소리

### 1. 최저임금 인상 - “밥 한 끼 먹으면 2시간 시급이 날아가요.”

대다수 청소년들은 일하는 강도에 비해 임금이 너무 낮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한 시간 내내 일해서 버는 돈이 한 끼 식사 값도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와 자괴심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너네 용돈 버는 거니까 얼마 안 쥐도 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한 달에 3, 40만원을 주거든요. 근데 적어도 잘 살려면 한 달 수입이 사오십은 돼야 하거든요.” (사례 1, 여)

“그 때 당시에 3,480원이면 20원 더 줘야 자장면 곱빼기 한 그릇 값이잖아요. 솔직히 말이 안 되죠. 최저임금이라는 게 개념이 참 이상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한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작은 돈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일의 강도에 비해서 너무 적죠. 적어도 서비스산업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고 봐요. 특히 맥도날드 같은 곳. 청소년들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노동자인데 왜 노동권에 있어서 성인들에 비해 덜한 대우를 받는지, 더불어 그런 비인간적인 최저임금을 매기고 계시는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물가가 엄청 올랐는데, 3480원에서 3770원이 뭐예요?” (사례 2, 남)

“최저임금을 받아도 돈이 여유롭지 않아요. 뺄 뺄지게 일해도 돈이 얼마 안 들어오니까, 다른 데 물가는 팍팍 오르고 있는데 최저임금은 낮게 오르니까 생활하기가 불편하죠. 하루에 차비만 2천 원 대가 쓰이고, 요즘 밥이 최고 싼 게 3천5백 원이고 웬만하면 5천원인데 거의 밥 한 끼 먹으면 거의 2시간 일한 비용이 날아가는 상황. 저번에 (학교) 소풍갈 때 필요한 비용이 만5천 원이었어요. 정말 하루 종일 다섯 시간 뛰어다지만 나오는 돈인데 하루 반나절도 안 되는 소풍에 날아가 버리니까 ‘아 돈 아까워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례 3, 남)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앞으로 몇 년 간 최저임금을 동결시키자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노동자 측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적어도 시급 4,760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고개를 끄덕였고, 그것도 부족하다는 말한 청소년도 있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일하는 청소년들의 시급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노동자쪽 주장이 맞는 것 같아요.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사례 4, 남)

“(그 사람들이) 올리지 말자고 했어요? 겨우 3,770원으로 사람을 한 시간 동안 시킬 수 있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만날 학교에서는 시간은 값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데 그렇게 말하면서... 최저임금이 동결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팍팍 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4,760 원도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밥 한 끼 먹으면 끝나는 돈인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순대촌 같은 곳에서는 백 원이라도 오르는 판국이니깐. 저번년도에 일 시작한 사람하고 올해 일 시작한 나하고 시작하는 금액이 500원 정도 올랐더라고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간접적으로라도 청소년들 임금도 오르는 것 같아요.” (사례 3, 남)

## 2. 노동부 근로 감독 강화와 안전한 권리회복절차 보장 - “그만큼 활동을 안 했으니까 저희가 모르는 거잖아요.”

청소년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노동부와 같은 정부기관이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비롯하여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알 수 있는 통로도 제한되어 있는데다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워낙 몇몇 업체에 한정되어 있고 허술하다 보니 정부에 대한 불신도 강하게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노동부에서) 조사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조사도 안 나오고 조사 나와도 점장 하고 이야기하고 뒷돈 주면 그냥 가요. 저희가 알바생이면 저희가 주인공인데 저희랑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점장하고만 이야기하고 뒷돈 챙겨서 가요.”

“노동부에서 그러는 걸 직접 보신 적 있어요?” (면접자)

“있죠. 공장에서 일할 때. 근로감독관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에 관한 서류를 보고 계셨고... 물어봐서 진실되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바보인 거예요. 감독관이 나와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십니까?’라고 물어봐서 그 사람이 ‘예’라고 대답하면 그 사람은 그 회사 속에서 바보인 거예요. 왕따인 거예요. 눈에 나는 거죠. 옆에 점장님이 서계시면 더더욱 얘기하기가 그렇죠.”

“일자리는 필요하고 조건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게 지금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면접자)

“네. 그럼 점장님은 더 주는 데로 가야지, 너 말고도 하겠다는 아르바이트생 많으니까 더 주겠다는 데로 가라 거의 이런 식이에요. ... 청소년노동법이라는 거, 단속을 정말 까다롭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청소년들이 힘이 부족해요. 문제제기해도 저희가 힘이 없으니까 그냥 묻혀요.” (사례 1, 여)

“연소근로자 종합보호대책도 만들고 알자 알자 노동법 캠페인도 하던데, 노동부가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면접자)

“저는 쇼하는 것 같아요. 전단지 같은 거 있으면 적어도 청소년들이 일하는 근로장에다 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알아도 일부만 알지 다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세금 받고 일하시는 노동부. 제가 맥도날드에서 6개월을 일했는데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지... 그 사람이 한 번 움직일 때 적어도 수백 명의 청소년이 덜 고생하거나 차별하는 게 드러나거나 최저임금을 덜 줬다든지 그런 게... 그냥 돌아보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사례 2, 남)

“청소년들한테는 알려지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노동부가) UCC 만들었다는 얘기도 처음 들었고... 학교에서도 유인물 한 장 안 날아온 상황이고... 감시 감독하는 것도 본 적도 없고...”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을 게시하라는 의무를 업주들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일하는 곳에 최저임금 얼마다 이런 거 붙여놓은 거 본 적 있어요?” (면접자)

“없어요. 전혀 없어요. 종이 쪼가리 한 장 붙어있는 거 없어요. 노동부가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나, 쉬는 시간 보장하고 있나, 욕설이나 폭력이 일어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한 감시를 좀 철저하게 하고 청소년들이 노동할 권리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노동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알려주면 좋겠어요. 못 받았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면 좋겠어요.” (사례 3, 남)

“노동부가 조사 나온다는 얘기 처음 들었어요. 그만큼 활동을 안 했으니까 저희가 모르는 거잖아요. 볼 수 있게 활동을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좋겠어요.” (사례 11, 여)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사업주에게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염려가 권리 회복 절차를 밟는 데 장벽으로 작용한 경우도 있었고 실제 신고 과정에서 관료적인 태도를 접하면서 노동부에 대해 안 좋은 인상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노동부가 권리 회복 절차를 밟더라도 추가

피해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려낼 필요가 있고 청소년들의 신고를 받는 자세도 고쳐 잡아야 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임금을 떼어먹었을 경우 노동부 같은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면접자)

“네. 근데 괜히 그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찾아와서 뭐라 그럴까봐 안했어요.”

“해코지 같은 걸 당할까봐 무서워서?”

“네.” (사례 9, 여)

“친구가 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요 (업체) 주소를 몰라서 못했어요. 신고할 때요 신경 써주고 그런 말투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 ‘아 그거 주소 알아야 하는데요’ 툭툭 내뱉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소를 모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럼 안 된다고... 별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았어요.” (사례 11, 여)

### 3. 평등한 일자리 창출 - “국가가 청소년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줬음 좋겠어요.”

청소년들은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별로 없고 조건이 열악할 뿐 아니라 고용과정에서 차별까지 일어나는 현실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법정 노동조건도 지켜지지 않는 일자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제가 방송통신고를 다니는데 주말에는 수업을 들으러 가야 돼요. 주말에 1, 3주만 학교 가느라고 쉬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아르바이트는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 자리를 늘리기 위해 직업훈련학교라는 걸 만들어놨잖아요, 나라에서. 근데 거기 청소년들도 많이 가요. 왜 가냐면 식대랑 차비랑 해서 한 달에 10만원씩 나와요. 그 돈을 받기 위해 가는 거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는 아이는 없을 거예요. 어른들도 일자리 없다고 하지만요 청소년들을 위한 자리는 없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왜 안 받아주는 것 같아요?” (면접자)

“첫 번째 조건은 어린 나이였어요. 어린 나이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 다음엔 외모적인 거였어요. 세 번째는 학벌이었어요. 주위에서는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야 너 뭐해? 일해야지 일해야지’ 재촉하는 분위기인데... 내가 안구하고 싶어 안 구하는 게 아니라 구하러 계속 다녀 봐도 안 되니까 막막한 거죠.”

“일자리가 너무 없다 보니까 최저임금 안주는 일자리라도 덤석 물게 된다는 얘기에요?” (면접자)

“네.” (사례 1, 여)

국가가 좀 더 나서서 청소년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 청소년들의 바람이다.

“국가가 좀 더 나섰으면 좋겠어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데서는 도서관 사서, 도로교통 유지하는

그런 부문에 청소년들이 알바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오히려 더 안전하구.” (사례 3, 남)

## [참고] 편의점 부당 서약 강요 자료

\* 제보한 청소년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관계로 지점 명칭을 공개하지 않음

### 서약서

헤미리마트 [redacted]점 [redacted]은 점장 이 [redacted]과 아래와 같은 사항을 서면을 통해 자의적으로 서약한다.

1. [redacted]은 헤미리마트 [redacted]점에서 장기복무하기로 약속한다. 1차적으로 2007년 12월 말까지로 하고 이후는 다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 퇴직하고자 할 때는 다음근무자가 확정되어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 할 수 있을 때까지 의무적으로 도와주고 퇴사한다.
4. 이상학은 임의로 [redacted]을 퇴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판악산점에 지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는 퇴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redacted]은 근무자의 하루일과, 생활규범을 지킬 뿐 만 아니라 점포에 있는 물품을 먹거나 가지고 갔을 경우 물품가격의 30배를 배상 한다.

2007년 6월 5일

성명 [redacted]

성명 이 [redacted] [redacted] [redacted]



## [자료3] 거리 상담을 통해 드러난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인권 실태

\* 발표 :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 거리 순회상담 취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청소년노동에 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코자 순회상담을 계획하였고 두 네트워크에 협력을 요청해 왔음. 이에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협력에 응하기로 결정하였고,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거리 상담을 공동으로 진행하였음.

### ○ 거리 순회상담 시기

- 1차 : 5.25(일) 오후 2시-6시. 인천 부평공원
- 2차 : 5.31(토) 오전 11:30-오후 1시.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광신정보산업고와 광신고 앞

### ○ 상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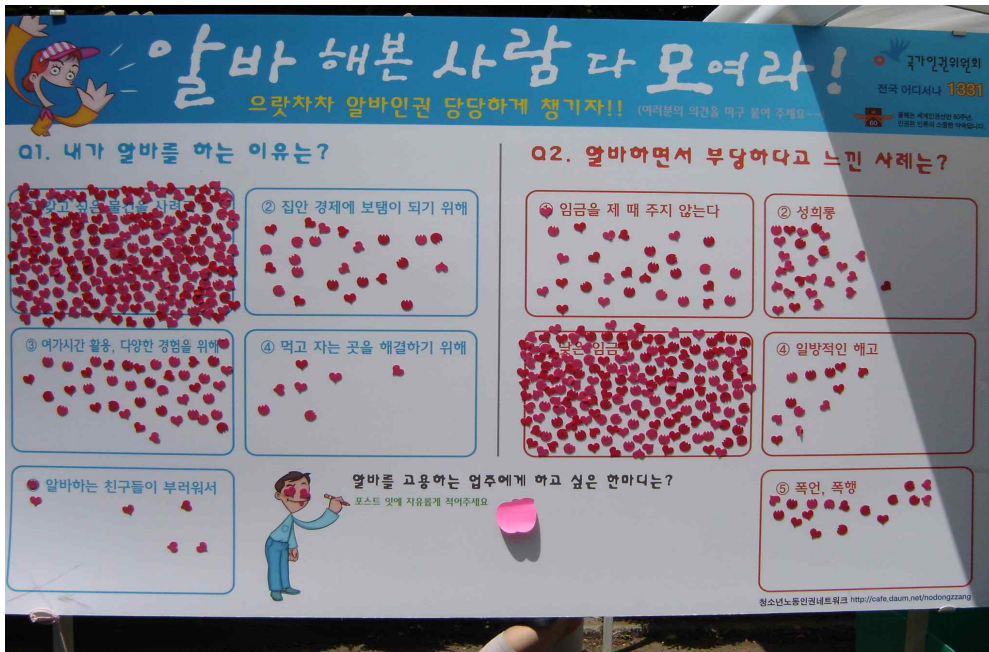
- 상담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섭외한 공인노무사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소속 활동가

### ○ 상담 참여 인원

- 1차 : 29명
- 2차 : 16명

### ○ 스티커 설문과 서명 동시 진행

- 스티커 설문 :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기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는 부당 사례를 알아보기 위한 스티커 설문을 진행.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기는 '갖고 싶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부당 사례에 대해서는 '낮은 임금'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아르바이트 시급에서 최저임금 보장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청소년 서명전도 동시에 진행함. 짧은 시간 동안 청소년들이 폭발적으로 서명에 동참. 총 333명 참여.

## ○ 상담 결과 분석

- 인천과 서울 관악구 신림동 2곳에서 청소년들의 상담을 들어본 결과, △최저임금 위반 △연장, 야간 노동에 대한 추가 수당 미지급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없음 △벌금 명목의 임금 갈취 등이 일어나고 있었음. 보수를 제때 주지 않거나 떼어먹는 경우도 보고됨.

- 특히 주유소의 경우, 저임금 장시간 노동 문제에 더해 청소년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음. 기름 냄새가 심해 두통이 일어나고 피부에 닿으면 벗겨지는 등의 증세를 호소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이 대부분.

- 서울 관악구 신림4거리에 위치한 순대촌(순대를 파는 음식점이 2개의 복층 건물에 들어서 있음)의 경우, 청소년 노동력에 대다수 의존해 영업을 하면서도 2천 원대의 시급을 제공하는 것이 확인됐음. 업소마다 시급이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최저임금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통적임. 배스킨라빈스와 같은 유명업체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오후 10시가 넘어서까지 야간노동을 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기간 명목으로 임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음.

- 청소년의 경우는 성폭력을 경험하면서 결국 일자리를 포기하게 되는 악순환에 놓여있음. 음식점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애초 근로계약을 맺은 업무 이외에 술 서빙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함.

- 대부분 청소년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자 동의서도 없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했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확인되었음.

[인천 지역 문제 사례]

| 번호 | 나이/성별  | 업체          | 일한시기          | 노동조건에서 나타난 문제점   |
|----|--------|-------------|---------------|--|
| 1  | 17세/ 남 | 주유소         | 07년 4월부터 2개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급 2,700원(07년 최저임금 3,480원)</li> <li>• 오전7시-오후 7시 또는 오전9시~오후9시. 연장노동 가산 수당 지급 안 함.</li> <li>• 한 달에 1번 휴일. 계속 서서 일함. 발에 물집 잡히는 일 잦았음.</li> <li>• 주유 내내 냄새 심하게 올라왔지만 마스크도 지급 안 함.</li> </ul> |
| 2  | 17세/남  | 주유소         | 08년초 겨울방학 1개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급 3,000원(08년 최저임금 3770원)</li> <li>• 오전9시~오후3시</li> <li>• 주유하다 기름이 넘쳐 피부가 벗겨지고 갈라짐. 자비 부담으로 치료</li> <li>• 실수로 기름을 흘릴 경우 배상해야 함</li> <li>• 휴일, 휴게시간 없음</li> </ul>                          |
| 3  | 19세/남  | 편의점         | 07년 1개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학 이용하여 새벽 근무. 오후 11시~오전 7시까지. 알바생의 야간 노동 동의나 노동부 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 노동 강제</li> <li>• 시급 3,200원(07년 최저임금 3,480원)</li> <li>• 식사 제공 없었고 하루에 음료수 하나 허용</li> </ul>                                  |
| 4  | 17세/여  | 학원, 치킨집 전단지 | 07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00부 받아 2시간 정도 돌리면 7천원 받음. 최저임금 위반</li> </ul>   |
| 5  | 17세/여  | 치킨집         | 07년 여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침 9시~오후 2시(월~일) 치킨 튀기는 알바</li> <li>• 시급 3,150원(07년 최저임금 3,480원)</li> <li>• 지각, 결근하면 임금을 안 준다고 하여 1달 임금 중 4만원 정도 받지 못함.</li> <li>• 휴일 없음</li> </ul>                                       |
| 6  | 19세/여  | PC방         | 08년 3월 1개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급 3,500원</li> <li>• 주말에만 아침 9시~밤 9시까지 근무</li> <li>• 친구를 소개시켜줬는데 사업주가 지속적으로 언어 성희롱을 하고 엉덩이를 건드리는 등 상습적으로 성희롱이 발생하여 친구가 한 달 정도 일하다 그만둠.</li> <li>• 하루 종일 컵라면 1개 주는 것이 식사의 전부.</li> </ul>   |
| 7  | 고등학생/  | 학원          | 07년 1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원에서 채점하는 아르바이트</li> </ul>  |

|    |        |         |                |   |
|----|--------|---------|----------------|---|
|    | 여      |         | 08년 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전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14일간 근무</li> <li>• 총 7만원 받음</li> </ul>   |
| 8  | 학생/여   | 패밀리레스토랑 | 08년 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식 패밀리레스토랑(디킨차이나)에서 일하던 중 손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음. 치료비로 5만원을 주고 종결</li> </ul>  |
| 9  | 16세/남  | 피자집 전단지 | 08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단지에 300장 돌리고 나면 3,000원 준다고 하여 돌렸으나 사장이 70장이 남았다고 다 돌리면 돈을 주겠다고 함. 다 돌리고 다음날 갔더니 확인해 보고 주겠다고 하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안 주었음.</li> </ul>       |
| 10 | 17세/여  | 통신사 전단지 | 07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급 3,000원. 최저임금 위반</li> </ul>  |
| 11 | 중학생/남  | 전단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6시간 일하고 1만원. 최저임금 위반</li> </ul>  |
| 12 | 학생/여   | 전단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6시간 일하고 1만원. 최저임금 위반</li> </ul>  |
| 13 | 학생/여   | 전단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당 10원씩. 1천장 돌리는 데 5시간 걸림. 최저임금 위반</li> </ul>  |
| 14 | 19세/남  | 뷔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홀 서빙 알바. 시급 3,000원. 최저임금 위반</li> </ul>   |
| 15 | 학생/여   | 식당      | 07년 여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맛대맛 식당에서 주말에만 12시-9시까지 일함</li> <li>• 시급 3,000원. 최저임금 위반</li> </ul>   |
| 26 | 고등학생/여 | 베스킨라빈스  | 07년 12월~08년 4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기간 명목으로 무급으로 일주일간 근무.</li> <li>• 벌금이라는 각종 이유를 들어 최대 10만원을 제하고 지급. 벌금 액수가 정해진 바 없고 문고리 고장 등을 이유로 벌금을 내라고 함.</li> </ul>                |
| 17 | 19세/남  | 웨딩홀     | 07년 8개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급 2,500원. 이후 시급이 3,000원까지 올라감.</li> <li>• 주말 이용하여 하루 평균 12시간 일함</li> <li>• 연장수당 받지 못함</li> </ul>                                      |
| 18 | 학생/여   | 분식집     | 07년 12월~현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급 3,100원</li> <li>• 보수를 제 때 주지 않음.</li> <li>• 매일 8시간 근무</li> </ul>  |
| 19 | 학생/여   | 치킨집     | 07년 7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치킨 튀기는 일을 담당</li> <li>• 시급 3,500원 주기로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2,500원 지급. 결국 1주일에 5만원 받기로 하였으나 2만원만 지급.</li> <li>• 술 서빙도 시킴</li> </ul> |
| 20 | 학생/여   | 거리노점    | 07년 12월~08년5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말 낮 12시부터 밤10시까지 근무</li> <li>• 일당 35,000원</li> <li>• 쉬는 시간 없고 저녁도 가게에서 먹음</li> </ul>  |

[서울 관악지역 문제 사례]

| 번호 | 나이/성별 | 업체         | 일한시기           | 노동조건에서 나타난 문제점   |
|----|-------|------------|----------------|--|
| 1  | 17세/남 | 신림동<br>순대촌 | 08년4~5월<br>2개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급 2,500원</li> <li>• 월~급, 오후 5시~10시. 보통 정리하고 나면 10시 20분 넘어 퇴근.</li> <li>• 철판에 덴 적이 많지만 그냥 연고 바르고 말았음.</li> <li>• 휴게 시간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끼리 손님 별로 없는 시간에 잠깐씩.</li> <li>• 주급으로 주기로 하고 시작했지만 제때 주지 않고 “시골 다녀와서 주겠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계속 1주일씩 미뤄서 줌. 첫 주급은 반만 줘서 나중에 그만둘 때 받았음. 조금 하다가 그만 들까봐 그만 두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함.</li> <li>• 그만 둔다고 말하면 험한 말을 하면서 주고 평소에도 “야 이 새끼야 똑바로 안 해” 등의 폭언을 함.</li> </ul> |
| 2  | 18세/여 | 신림동<br>순대촌 | 06년 1개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4시에 시작해서 10시~11시까지 근무</li> <li>• 시급 1,500원(3일간). 4일째부터는 2,000원(2006년 당시 최저임금 3,100원)</li> <li>• 야간노동 동의나 노동부 장관 인가 없이 야간노동 강제</li> </ul>  |
| 3  | 17세/남 | 신림동<br>순대촌 | 08년 4~5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후 6시~10시 근무</li> <li>• 양지타운 00업소는 시급 2,200원. 6개월 후 500원 인상해준다고 했음.</li> <li>• 자리를 옮긴 민속타운 00업소는 시급 2,500원. 집안 사정으로 3일간 일하다 그만둠. 3일 일한 임금 3만원 아직 못 받았음.</li> <li>• 다시 양지타운 00업소에서 일하는데 시급 2,500원. 6월 15일부터 2,700원 주겠다고 함.</li> <li>• 일하다 불판에 데는 일 많은데 사장님이 신경 쓰지 않음.</li> </ul>   |
| 4  | 학생/여  | 신림동<br>순대촌 | 4일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일간 17시간 일함</li> <li>• 시급은 2,500원</li> </ul>  |
| 5  | 학생/여  | 신림동<br>순대촌 | 07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인아저씨가 옷을 내려주겠다고 하면서 등 뒤로 손을 쓸어내려 엉덩이를 만지고 불과 어깨에 손을 대고 만짐. 여러 번 있었지만 딱히 제지할 방법이 없고 불쾌해서 4달 일하고 그만둠.</li> <li>• 시급 2,000원. 3달이 지나서 2,500원</li> </ul>  |
| 6  | 17세/여 | 신림동<br>순대촌 | 07년말<br>1개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후 5시~10시(원래 9시까지 하기로 하였으나 10시까지 일함)</li> <li>• 최초 시급 2,000원에서 3주후 2,400원으로 인상</li> </ul>   |
| 7  | 18세/여 | 배스킨<br>라빈스 | 08년 5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급 3,300원. 처음에 2,900원이나 3,000원으로 시작한 사람 있음.</li> </ul>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주일에 5일 근무. 한번 할 때마다 3시간~5시간.(미리 요일이나 시간을 특정하지 않았음)</li> </ul>   |
|    |            | 홈에버        | 08년 4월<br>2주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 끝나고 가서 밤 12시까지</li> <li>시급 3,900원</li> <li>야간수당 없었음</li> </ul>  |
| 8  | 19세/여      | 배스킨라빈스     | 08년 2월~<br>3월 1개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일까지 하루 5시간(오후 6시~오후 11시)</li> <li>처음 일주일은 2,900원. 2주째부터 3,000원.</li> <li>시작할 때 매달 100원씩 인상해 준다고 했지만 1년 정도 일한 친구 시급은 3,500원.</li> </ul>   |
| 9  | 19세/여      | 배스킨라빈스     | 08년 현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후 6시부터 5~7시간 근무</li> <li>처음 시급 2,900원. 한 달 지나서 3,100원. 중간에 3,500원으로 한 번 더 오르고 현재 3,600원 정도 받고 있음.</li> <li>11시 넘을 때까지 일하는 경우 많음. 야간 수당 지급 없음.</li> <li>휴게시간 따로 없고 밥 먹을 때 잠깐 쉬는 정도.</li> </ul> |
| 10 | 고등학생/<br>여 | 배스킨라빈스     | 08년<br>현재까지<br>4개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시 이후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음</li> </ul>  |
| 11 | 고등학생/<br>여 | 배스킨라빈스     | 08년 현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루 3~5시간 근무<br/>(평일 7시30분~11시30분), 토요일 (2시~6시)</li> <li>시급 3,300원</li> </ul>   |
| 12 | 18세/여      | 미스터<br>피자  | 08년<br>4월~5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급 3,500원. 주말(토/일) 3,800원.</li> <li>평일 오후6시~11시, 주말 11시~23시 일함</li> <li>일주일에 두 번 씬</li> </ul>  |
| 13 | 17세/여      | PC방        | 08년 3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주 일하고 그만둠.</li> <li>한 달 이상 일하겠다고 각서도 썼고 근로동의서 부모 서명을 학생 본인이 한 것이 마음에 걸려 임금을 포기.</li> <li>원래 한 달에 85만원은 주기로 했었음</li> </ul>   |
| 14 | 14세/남      | 피자집<br>전단지 | 07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단지 돌리는 일을 나홀간 함.</li> <li>한 아파트 당 2,000원 주기로 하여 세 아파트를 담당하였으나 3,000원밖에 주지 않음.</li> </ul>  |

## [자료4]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자 노동인권 확보를 위하여 - 최저임금 현실화와 법·제도적 대안 마련을 중심으로 -

\* 발표 : 이수정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설 민주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1. 최저임금 현실화 : 최저임금은 청소년 노동자의 최고(?)임금

조사 결과 드러난 청소년 노동자의 저임금 실태는 소규모 사업장의 전반적인 저임금 문제, 나이 차별과 학습권 우선 등의 논리와 맞물리면서 '초'저임금이 당연시 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특히, 1일 7시간(연소노동자 근로시간 보호 규정, 「근로기준법」 제69조) 이상의 장시간 노동, 1일 8시간 초과 노동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밤 10시 이후의 야간노동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과 유급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이 중첩되어 1318 청소년 노동자들은 전반적인 저임금 구조 속에 혹사당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청소년 노동자가 할 수 있는 노동이 제한적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노동에 대해 '용돈 벌이'인식이 팽배하다보니 사업주들은 청소년 노동자를 값싸고 부리기 쉬운 노동력쯤으로 여기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초'저임금 실태가 되풀이 되고,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아이러니하게도 청소년 노동자들이 열망하는 '최고임금'이 되고 있다.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수준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곧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현실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합리적인 인상은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 2. 노동부의 실질적인 근로감독 : 업주와 몇 마디 나누는 게 특별근로감독?

2008.05.30. 노동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겨울방학동안 지도·점검한 666개소 중 487개소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기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사업장의 근기법 위반율은 “59.5%(05)→58.3%(06)→68.6%(07)→73.1%(08. 겨울)”로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노동부의 근로감독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실태 조사 결과 청소년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임금지급 4

대 원칙) 위반, '최저임금' 위반이나 '시간외근로 가산수당' 미부여 등 임금관련 제 규정 위반 외에도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법령 요지 등의 게시 의무' 위반, '최저임금' 위반, '연소자 증명서'와 '취직인허증' 사업장 비치 위반, '폭언·폭행 금지', '위약 예정의 금지', '성희롱 금지' 위반 등 광범위한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노동부의 근로감독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근기법 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최저임금법」 위반, 빈번한 성희롱 발생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취약한 노동안전보건 실태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서는 제대로 점검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2006.10.부터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관계 보호 법규 및 아르바이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2008.05.30. 보도자료)

그러나 노동부의 지도·점검은 첫째, 방학을 이용한 일부 사업장(대형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 등)에 국한한 형식적인 근로감독, 둘째, 아르바이트생 등 노동자에 대한 조사 없이 사업주에 대한 형식적인 질의응답으로 끝나는 근로감독, 셋째,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에 대한 처벌이나 후속조치 없는 근로감독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노동관계법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에 홍보하고 소책자 등을 비치하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전국적인 단위의 일회적인 홍보행사에 그치는 생색내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노동부의 홍보를 통해 노동기본권을 알게 되었거나(전체 응답자의 5.9%), 노동부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응답한 이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청소년 노동자들은 노동부의 지도·점검의 허술함으로 인해 최소한의 법의 보호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후속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사전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 대한 상시적인 지도·점검과 청소년 노동자를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상시적인 특별근로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동부의 지도·점검시 근기법 위반 사항 뿐 아니라 '직장내 성희롱' 예방, '노동안전' 실태 점검 등 배달 교통사고와 화상, 자상, 근골격계 질환 등 노동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통해 청소년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3.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인권위 권고 사항 이행 촉구



현행법상 취업규칙은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작성하도록 규정(근기법 제93조) 하고 있고,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결정한다. 따라서 상시 노동자수가 10인 미만이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노동조건이 결정된다.

그러나 노동조건을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최고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시간외 노동 가산임금', '부당해고 제한' 등 노동조건을 중요한 부분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이 예외 되는 규정은 더욱 지켜지지 않는 등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동조건을 정하여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근기법의 기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상시 노동자수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면 적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유독 근기법만이 적용상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8.04.14. 노동부장관에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을 권고하였다. 주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 문 -

가.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궁극적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확대적용의 시기 및 범위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법 규정으로 명문화할 것,

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저임금 문제 및 무제한적인 장시간근로 예방차원에서 법 제14조(법령요지 등의 게시), 제50조 제2항(1일 8시간 근로) 및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은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즉시 개정할 것,

다. 근로기준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근로감독행정의 강화 및 근로감독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라. 근로기준법의 입법목적이 실제로 노동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사용자의 법 준수 및 근로자의 권리의식 제고를 위해선 그 내용을 명확히 알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노동부가 직접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담은 「교육자료」(소책자)를 만들어 5인 미만 사업장에 배포하고 각 사업장에 상시 게시하도록 지도할 것.

정부와 노동부는 위의 권고안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법·제도적 대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청소년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령요지 등의 게시’, ‘연장·야간·휴일의 가산임금 적용’, ‘해고의 제한’ 규정이 즉각적으로 적용되도록 법 개정예 앞서 시행령(근기법 시행령 제7조 【적용범위】)부터 개정해야 할 것이다.

#### 4. 노동인권 교육 실시 :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노동부의 홍보나 사업주 교육 등 사전 예방 조치가 미흡하다보니 청소년 노동자는 최저임금 미달 정도 외에 자신들의 노동권 침해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에 대해 물어보면 대다수가 “알려주는 데가 없다”도 대답하여 청소년들의 노동기본권과 노동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자신들의 노동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 노동기본권 침해 사실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로 “청소년근로 보호 종합대책”(2005.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청소년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부서가 마련) 시행 3년이 된다. 3년이 지나도록 대책 내용 중 노동교육과 관련하여 ‘중·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교육’, ‘청소년 대상 연소자 근로조건 교육’, ‘연소자 다수고용 사업주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한 세부계획은 아직도 “마련 중”이다. 대책 마련과 ‘친기업적인’ 교과서 개편을 통해 노동기본권과 노동3권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제공하고,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노동인권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부처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자료5] 후속 활동 계획

파이루(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1. 웹사이트(<http://www.1318alba.net>)를 통한 서명전과 고발 접수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6월 한 달 동안 웹사이트를 통해 '합리적인 최저임금 인상' 서명전 진행과 최저임금 위반 사례·노동법 위반 사업장 접수, 취합된 결과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고발

### 2.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촉구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노동법 위반 상습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촉구, 특별근로감독 과정과 결과에 대해 각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에서 적극 모니터. 또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이행이 미흡할 경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하여 실질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촉구 예정

### 3. 국가인권위원회의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 마련에 협력

설문조사, 면접조사, 거리상담 조사 결과를 국가인권위에 전달하여 청소년 노동실태 연구와 청소년 노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에 반영되도록 협력

### 4. 최저임금 심의 기간 직접 행동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시기인 6월 한 달 동안 '생활임금 기획단'과 연대하여 청소년 노동자의 최저임금 실태를 고발하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직접 행동

### 5. 거리서명전, 거리상담과 노동인권 홍보

서울, 인천 지역에서 청소년 노동자의 최저임금 확보를 위한 거리서명전과 청소년 노동권 침해 사례에 대한 거리 상담, 지켜져야 할 노동인권 홍보

## 6. 청소년 노동권 확보를 위한 2라운드 진행

올해 두 단체(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청소년 노동권 확보를 위한 제1라운드로 청소년들의 '초'저임금 실태를 파악하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직접행동에 집중. 1라운드 이후 청소년 노동권 확보를 위해 집중해야 할 이슈를 발굴, 제2라운드를 준비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청소년 노동권 확보에 주력할 예정